

2019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6. 3. ~ 6. 13.(8일간), 4팀 21명
- 감사범위 : 2015년 10월 이후 추진업무
- 감사중점 : 법령준수 여부, 재정누수, 보조금안전관리실태 등
-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96건
 - 행정상 조치 : 55건(고발1, 주의 17, 시정 34, 개선·권고 3)
 - 재정상 조치 : 490건 706백만원
 - 추징 50건/250백만원, 회수 418/269, 감액 7/137, 기타 39/50
 - 신분상 조치 : 14건 훈계 30명
 - 현지처분 41건(주의 25, 시정 15, 통보 1)
- 적극행정 현장면책 : 3건
 -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훈계→면책)
 - 예산절감 및 모니터링 강화 인정
 - 황간 물류단지 등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훈계→면책)
 - 검토보고 및 납부독촉 수차례 공문 발송 등 적극적 대처
 - ○○ 경로당 신축사업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훈계→면책)
 - 사업비 부족으로 낙찰자 계약 포기에 따라 조기 준공 추진
- 적극행정 지원 현장 사전컨설팅감사 : 3건
 - 단독주택 추인 가능 여부(인용)
 - 내진설계 확인서 등 구조 안전 확인서류 작성을 통해 구조 안전 확보
 - 원촌리 농로로 이용중인 사유지의 공공시설 편입된 토지 보상(인용)
 - 감정평가액,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등 종합적 고려하여 보상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축한 건축물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처리(인용)
 - 매각대금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귀속, 부기 등기 의무 없음
- 수감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 7명(훈격 도지사)

II. 총 평

- 인구 5만의 영동군은 특산물인 포도와 와인산업을 특화함과 동시에 천혜의 관광자원 및 국악을 접목한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고 있음
- 금년도 감사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서 '지적위주 감사'에서 탈피하여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에 체감되는 문제 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고 실시 하였으며
 -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96건으로 '13년(57건) 대비 39건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조사업자의 공금 횡령 건이 발견되어 고발 처분코자 함.
 - 재정상 조치는 706백만원으로 '15년(318백만원) 대비 388백만원 증가하였고,
 - ※ 추징 250('13년 87), 회수 269('13년 46), 감액 등 187('13년 458)
 - 신분상 조치는 훈계 30명으로 징계 대상자는 없음
 - ※ 징계 - ('15년 1), 훈계 30('13년15)
- 특히, 이번감사에서는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확인서 없이 3건을 면책처리 하였고, 현장에서 사전컨설팅감사 3건을 신청받아 one-stop처리하여 감사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였음.
- 2019년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속 기소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자체검토후 훈계로 부적정하게 처리
 - '17~'18년 지역아동센터에 교부한 운영비 및 급식비 보조금을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임의로 입출금하여 사적사용 및 이에 대한 정산점사 소홀
 - 석유판매업 위반업소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감경 처분
 -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와 체결하여야 함에도 5개부서에서 8건 148백만원을 미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 ○○○○ 서비스시스템 구축장비 사업과 관련 물품규격서에 특정 규격을 한정하여 납품 받음

【인사·총무·규제분야】

○ 공무원 범죄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자(벌금형 100만원, 300만원)에 대해 내부검토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요구로 검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없이 자체 훈계 처리

○ 실적가점 및 인사량시스템 근무평정 지도 감독 부적정

- 실적가점 부여시 동일 유공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1/N을 적용한 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자 및 팀장에게 모두가점을 과하게 적용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평시 부서에서 감점항목은 만점(6점)에서 징계, 근무태도 등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여 근무평을 부적정하게 실시

【사회복지분야】

○ 착오지급된 기초연금 회수 소홀

- 2015년 착오지급된 직역연금 137건 178,433천원을 착오 지급하고 이에 대한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9988 행복지킴이사업 관리·감독 소홀

- 9988 행복지킴이사업 참여자가 도에서 시행하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중복 참여하고, 9988 행복지킴이 일지에는 지킴이 활동을 허위로 하고 기제·활동비를 부당 수령(4명 262천원)

【문화·관광·체육분야】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정산점사 미실시

- 2개 사업 327,540천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지출증빙서류 없이 집행내역 및 통장사본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제48회 ○○○○축제 지도·감독 소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같은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14,400천원(월1,800천원), 간사 8,000천원(월 1,000천원)의 인건비를 근무일지, 근무내역 등과 같은 증빙자료 없이 거래내역 확인증(입금내역)만을 첨부하여 인건비를 지급

【농정·축산분야】

○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보조대상자 선정 부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 등을 통해 10,000㎡이하 농가를 선정해야 하나, 확인없이 보조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면적(실경작 10,000㎡이상 → 제출 10,000㎡이하)대로 선정하거나 지원대상 면적초과자 8명 선정

○ 쌀소득보전·발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지전용 필지 등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발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확인없이 농지전용 필지에 부당지급
- ※ 농지전용 필지 부당지급
- 91필지 3,870천원(쌀소득보전 24필지 1,822천원 / 발농업 67필지 2,048)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건축물 재산권 확보 소홀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청구시 관련 증빙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시설물 현지 확인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 등 관리 소홀
- ※ 보조금 지급 : ‘15.10.29(건축물 등재 ’ 16.11.28 / 등기부 등재 ‘16.12.13)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부과 소홀

- 상속자 및 지목변경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음 ※ 29건 40,478천원 정도

○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정 누락

- 산업단지 감면 후 3년 이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정하지 않음.(16건 207,735천원)

【예산·회계분야】

○ 농정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부적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나라장터에 공고를 통해 입찰 등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였어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 부적정 추진
※ 수출포장재 지원사업(○○과) 등 19개 사업 2,349백만원 1인 수의계약

○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계약금액이 15,000천원 이상으로 전문공사 발주 시 공사에 상응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체결(시설사업소 등 7개 부서, 10건, 계약금액 147,898천원)

○ 징계자 및 교육과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 징계자에 대해 정근수당 부적정 지급 및 교육과견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특수업무수당 등을 29명 5,684천원 오지급

【경제·교통분야】

○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대만 등

- ○○주유소와 ○○주유소가 휴업 중 땅굴을 파서 송유관 도유사건(‘18.6)으로 경찰 조사 중인 것을 인지하고도 휴업신고 할 것으로 자진 안내하여 내부수리 중인 것으로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휴업 신고*를 수리
* 휴업신고 : 1차(‘14.2.18.), 2차(‘16.12.28.), 3차(‘18.1.5), 4차(‘19.1.23)
- ○○주유소(대표:○○○)는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2017.3.16., 2019.3.27.일 적발되었음에도 두차례 모두 사소한 부주의를 인정하여 감경 처분

○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리 소홀

- 기계식 주차장 2건에 대하여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2~18개월 정도 철거를 지연했으며, 운행중지 등의 현지 확인도 이뤄지지 않아 철거 전까지 운행여부 조차 알 수 없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행정처분 소홀

- 화물차 법규위반 차량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도 법규상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대상임에도 계도만 했을 뿐, 38건은 처분하지 않음

- 유가보조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 3개월 내에 처분 하여야 함에도 2015~2018년 부정수급내역에 대해 29건에 대하여 모두 20~최대 755일까지 지연 처리 함

○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미처분 건설기계도 있는 등 장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함

※ 감사일 현재 미처분 대상 : 70대, 미부과 과태료 금액 : 32,850천원

○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

-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계약해지 하여야 하나 (주)○○산업개발(○○산업단지, 착공전)은 일시납하기로 분양계약을 하고, 고지서 발부도 하지 않았으며, 11개월째 분양대금 미납중임

※ (주)○○○○개발 : 체납기간 - 2018. 7 ~ 현재 / 체납액 - 29억원

【보조금분야】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사적 유용에 따른 보조금관리 집행 지도·점검업무 소홀

- ‘17~‘18년도 분기별로 교부한 운영비 및 급식비 보조금 계좌에서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무단으로 수시 출금(현금 및 CD이체)하고, 수회로 분할하여 CD입금 및 폰뱅킹 등 출금 총액을 맞춰 입금
(‘17~‘18: 출금 총 221회, 입금 총 311회, 총127,824천원 출금 후 재 입금)

○ ‘17 마을기업(○○영농조합)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은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하나 미이행
- 보조사업 계획 변경 집행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 및 신규물품 취득

【정보·통신·지적분야】

- 국악소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 구매사업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임에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통해 구매대상 물품을 특정회사 모델로 지정하여 계약의 공정성 저해
- 영동군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계약서에서 명시한 기상청 날씨예보 데이터 DB구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이 안됨에도 시정조치 없이 검수

【공유재산분야】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 감사일 현재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8필지에 무단점유 중임에도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토목·도시계획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사용 불가 항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여부, 증빙자료(사진) 중복,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안전관리비에 부가세 포함 등 안전관리비 정산 조치
- 영동군 노후관 개량 예산확보방안 강구
 - 현재 유수율 59.7%에서 계획 목표치인 8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이 약 75km, 149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반영되어 있는 노후관 개량은 약 63km, 127억원만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수율 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 예산 확보 필요

【건축행정·공사분야】

-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적정성 심사 소홀
 - 투자유치촉진센터 건축공사를 도급업체인 ○○토건(주)는 여러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체인 ○○건설(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과에서는 하도급 계약 통보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영동군○○○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추진 부적정
 - ○○○복지관 증축분에 대하여 2019. 4. 10. 기초 터파기를 하고, 현재 공정율은 30%로 1층 기둥 설치공사 중에 있음.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공사감리자 지정 후 공사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건축인허가 사전절차 없이 실 착공을 하는 등 「건축법」 제11조,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안전관리·토목분야】

-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및 준공 부적정
 - 세류시설 및 축중계를 미설치 하였음에도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1차부) 설치여부 확인 없이 준공금 과지급(22백만원-제경비포함)
 -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1차부) 준공에 따른 환경관리비 정산시 직접 지급한 노무비와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 이에 대한 확인 소홀로 중복지급(1,080천원 과지급)
- ○○○○○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할 경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이나,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도금액이 576백만원→985백만원으로 변경(70.6% 증)됨에도 사전절차 미이행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전재해영향성 재협의 대상(불투수층 면적 10%이상 증가)이나 미설시

【보건·식품·환경분야】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통보를 받고 아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확인서를 청구하고 행정처분이전 의견수렴 결과 항소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실시

○ 산업폐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건축물 신축으로 산업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여야 하나, 오수(하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산업폐수에 대하여는 미부과 하였음.

○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고 및 굴착종료 업무 소홀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5년)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안내하지 않은 결과 22개소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연장신청 없이 무허가 사용됨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후 원상복구예정일이 경과하고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1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

○ 폐기물처리업소 과징금 및 행정처분 부적정

-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1차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이행하거나 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철거 등을 확인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2차 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를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1년 간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이 없었고, 1년이 지나 현지 점검 후 또다시 1차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재 실시 함.

V

처분요구 내용

① 처분요구 총괄표

(단위 : 천원)

분야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주 의	시 정	개 선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계	경정계	훈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5	17	34	4	490	705,849	50	249,846	418	269,209	7	136,929	15	49,865	30		30
인사총무 ·규제	2	1		1											1		1
사회복지	6		6		213	186,975			185	182,664			4	2,333	5		5
문화관광 체육	3	2	1												3		3
농정축산	6	2	4		91	3,871			91	3,871							
지방세 세외수입	3		2	1	45	248,214	45	248,214									
예산회계	4	3	1		29	5,684			29	5,684					5		5
경제교통 민원	4	2	2		76	33,374			76	33,374					7		7
보조금	2		1	1 (교발)											4		4
정보통신 ·지적	2	1	1												2		2
공유재산	4	2	2		5	1,632	5	1,632									
토목시설 공사	3	1	1	1	15	41,139			12	40,625	3	514					
건축행정 공사	4		4		2	20,503					2	20,503			1		1
안전관리 토목공사	4	1	3		2	115,912					2	115,912					
보건식품 ·환경	8	2	6		12	48,545			1	1,013			11	47,532	2		2

② 처분요구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항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경정 계	훈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5	490	705,849	50	249,846	418	269,209	7	136,929	15	49,865	-	30
1	공무원 범죄사건 수사기관 통 보사항 처리 부적정	주의	-	-										1
2	실적가점 및 인사량시스템 근무 평정 지도감독 부적정	개선	-	-										
3	9988 행복지킴이사업 관리· 감독 소홀	시정	4	262			4	262						
4	건조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소홀	시정	30	4,097			28	3,524			2	573		
5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위반 및 장애수당 업무추진 소홀	시정	2	1,760							2	1,760		
6	착오지급 된 기초연금 회수 업무소홀	시정	137	178,433			137	178,433						5
7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지출 업무 지도 감독 소홀	시정	40	2,423			40	2,423						
8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징수 업무 등 추진 소홀	시정	-	-										
9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	-										2
10	아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 관 리 감독 소홀	주의	-	-										
11	제○○○회 영동○○○○축제 추진 소홀	주의	-	-										1
1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 적정	시정	-	-										
13	친환경농자재살포기보조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	-										
14	쌀소득보전·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91	3,871			91	3,871						
15	건설기계 조종면허 미조지자에 게 보조금 지급업무 소홀	시정	-	-										
16	농업인소규모창업지원건축물재 산권 확보소홀	시정	-	-										
17	전문농업인치고경영자과정필수 지원자격미확인	주의	-	-										
18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징권부과 누락	시정	29	40,478	29	40,478								
19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시정	16	207,736	16	207,736								
20	하천점용료 관리 및 부과·징 수 소홀	개선	-	-										
21	농정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도 감독 업무 소홀	주의	-	-										
22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집 행 부적정	주의	-	-										5
23	보조금(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	-										
24	징계사 및 교육과건자 수당지 급 부적정	시정	29	5,684			29	5,684						
25	서류판매업자 행정처분 태만 등	주의	-	-										4
26	기계식 주차장 정기 업무 소홀	주의	-	-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행정처분 업무 태만	시정	6	524			6	524						3
28	건설기계정기검사과태료 부과	시정	70	32,850			70	32,850						

[illegible]

③ 현지처분 목록

일련 번호	조치구분	관계부서	제 목	재 정 상	수령인
1	시정	행정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소홀	-	
2	주의	"	전보제한자 전보 조치 부적정		
3	통보	"	육아휴직 등 업무대행자 지정 소홀		
4	주의	"	문서 공개 업무 소홀		
5	시정	"	영동군 무연고 공설납골묘 관리 소홀	-	
6	시정	"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 소홀		
7	주의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업무 추진 소홀	-	
8	주의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계업무 지도 감독 소홀		
9	시정	시설사업소	게이트볼장 내 가설건축물 지도 감독 소홀	-	
10	주의	국악문화체육과	언론사 광고 의뢰 부적정	-	
11	주의	"	기념품 구입 및 관리 소홀	-	
12	주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후 관리 소홀	-	
13	시정	재무과	등록면허세 부과 철저	-	
14	주의	국악문화체육과 외 3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15	주의	가족행복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도감독 소홀	-	
16	주의	가족행복과 외 1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과목편성 부적정	-	
17	시정	가족행복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추진 소홀	-	
18	주의	산림과	2017 산림소득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지원사업 계획변경 검토 소홀	-	
19	주의	산림과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미 변경 임도시설사업 시행	-	
20	주의	산림과	벌채지 운재로 복구 준공감사신청 수수료 지연 납부	-	
21	시정	산림과	공유재산 공제회비 체납에 따른 조치	2,004천원	

일련 번호	조치구분	관계부서	제 목	재 정 상	수령인
			소홀	추징	
22	시정	민원과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부적정	-	
23	주의	국악문화체육과	○○○○○ 홈페이지 운영관리 소홀	-	
24	주의	안전관리과	개인영상정보 관리 소홀	-	
25	시정	경제과	재해영향성(사전재해영향성) 조치결과 등 협의이행 소홀	-	
26	시정	재무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소홀	-	
27	시정	안전관리과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업무 소홀	-	
28	주의	건설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리 소홀	-	
29	주의	환경과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사업장 확인 소홀	-	
30	주의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규정 미준수	-	
31	주의	환경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업무 소홀		
32	주의	환경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	
33	주의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	
34	시정, 주의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35	주의	보건소	허가증 교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	
36	주의	환경과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미준수	-	
37	시정	건설교통과	미착공 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	
38	주의	산림과 경제과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39	시정	행정과	○○○○○ ○○○○ 근무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홀	173천원	
40	시정	가족행복과	영동군 ○○○○○○○○○○상담소 운영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43천원	
41	주의	각읍면	2019년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부 적정		

처분요구서(1)

【제 목】 공무원범죄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현 황】

《표1》 공무원 징계요구 및 처분 지연 내역

직급	성명	접수일자	혐의내용	징계요구		징계의결		비고
				요구일	내용	의결일	내용	
시설6급	○○○	2015.01.30.	공무집행방해	2015.4.20.	경징계	2015.05.15	불문경고	
행정8급	○○○	2016.06.28.	음주운전	2016.08.26.	경징계	2016.09.29.	감봉1월	
시설8급	○○○	2016.10.21	"	2016.12.06	경징계	2016.12.29	견책	
시설9급	○○○	2016.05.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8.26	경징계	2016.9.29	불문	
행정6급	○○○	2018.4.27	" (처상)	2018.6.20	경징계	2018.6.27	불문경고	불합
행정8급	○○○	2019.1.1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019.2.18	경징계	2019.3.15	감봉1월	
방송통신6급	○○○	2019.2.13	특정범죄가중처 벌(뇌물 등)	2019.4.17	중징계			
행정6급	○○○	2019.2.13	알선뇌물수수	2019.4.17	중징계			
행정6급	○○○	2019.2.13	입찰방해	2019.4.17	경징계			

《표2》 공무원 범죄 통보자 처리 부적정 내역

통보사항				징계요구		징계처분		비고
통보일시	통보기관	내용	내용	요구 일자	요구 내용	처분 일자	처분 내용	
'15.10.12	청주지검 영동지청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위반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100만원)	-	-	-	-	훈계 (‘15.11.12)
'15.10.30	청주지검 영동지청	"	구약식** (벌금300만원)	-	-	-	-	훈계 (‘15.12.8)

* 행정8급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벌금 100만원)

** 행정6급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벌금 300만원)

【지적내용】

1.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기한 미준수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9건의 비위공무원에 대해 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1월)을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지연 처리하는 등 공무원비위 사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공무원범죄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경우에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등으로부터

공무원범죄 피의사건 처분 결과(구약식 벌금형)를 통보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행정6급 ○○○는 2015. 8. 18. 9:20경 본인 소유의 충북37가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교삼거리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61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15. 10.30(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 영동군 행정8급 ○○○는 2015. 8. 25. 8:40경 영동읍 동정리 가마실 주공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34누 0000호 모닝승용차로 동정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54세)를 들이받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나갈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15. 10. 15(목) 청주지방법검찰청 영동지청으로 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임.
- 영동군 ○○○○담당관은 위의 2건의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약식 기소된 사건으로 영동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경징계 의결”요구 하도록 검토보고를 한 후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 검토보고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분상 훈계”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해 영동군 ○○○○담당관실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통보해야 함에도 실무상 통보하지 않고 있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수사·재판진행중인 사항, 개인정보 등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협의를 위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결요구 하도록 하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는 부득이 징계 대상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1개월이내에 징계의결 요구

는 촉박한 기간임,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의 예외적으로 1개월 이내 기간을 지킬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고려하여 실무상 기간 준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약식 결정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규정 연찬 및 철저한 업무숙지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개선하고. 다만, 고의범죄·중대범죄 사안이 아닌, 교통사고처럼 일상화된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이미 표2와 같이 제재의 예방적 기능을 다했음에도 징계별 부과는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선처해 주길 바라고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기획감사담당관

○ 행정상 처분 : 주의

-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요구된 사안에 대하여는 기한내(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고, 공무원 범죄사건이 공소제기 결정 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규칙 별표1~4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 접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 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구약식 처분된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겠음.	기획감사관	행정6급, 이종수 (740-3072)

처분요구서(2)

【제 목】 실적가점 및 인사랑시스템 근무성적평정 지도감독 부적정

【현 황】

□ 동일 공적 실적가점 부여 현황(2015~2018)

연도별	공적유형						비고
	계(명)	예산절감	예산확보	수상	시책평가	투자유치	
계	48	2	22	2	20	2	
2015 상·하반기	12	2	2		6	2	
2016 상·하반기	12		8	2	2		
2017 상·하반기	14		4		10		
2018 상·하반기	10		8		2		이중부여2

□ 인사랑 시스템 근무평정시 임의감점 현황

연도별	실과소 읍면	임의감점자(명)	오류유형
계	95	656	
2015상반기	14	44	감점부여
2015하반기	8	32	점수초과 1명(8.0), 임의감점
2016상반기	9	117	임의감점
2016하반기	17	54	점수초과 1명(6.3), 임의감점
2017상반기	9	80	초과점수 부여(6.5), 임의감점
2017하반기	8	69	감점 불일치 2명, 임의감점
2018상반기	15	116	감점자 1명 미감점, 임의감점
2018하반기	15	144	감점자 1명 미적용, 임의감점

※ 세부내역 별도 관리

【지적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기준을 사전의결하여 전직원에게 예고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직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탁월한 근무실적과 징계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 비율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2항에서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는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점(2016.5.19. 개정 전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실적가점 적용 부적정

- 영동군에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성과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성과발생시 소정의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직급별 근무평정기간내의 실적 가점을 평정점수 반영비율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성과별 실적가점 부여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최종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적가점 적립현황을 본인에게 공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적가점 유효기간은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동안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간 성과별 실적가점(별첨)에 따라 실적에 따라 동일 공적으로 2개 이상의 실적가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실적가점으로 부여하고, 동일 공적에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공적일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수로 균등 분할한 포인트 점수를 개인별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향후 승진과 직결되며, 순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실적가점에 있어서 점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여해야만 했음.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근무평정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시 공적에 대하여 기여율을 감안하여 동일 공적에 대하여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경우 공무원수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2015년 상·하반기 ○○○○

1) 동일공적 : 상급기관 평가유공, 투자유치, 예산확보, 시책평가 등

행정6급 〇〇〇 등 12명, 2016년 상·하반기 〇〇〇 행정6급 〇〇〇 등 12명, 2017년 상·하반기 〇〇〇 시설6급 〇〇〇 등 14명, 2018년 상·하반기 〇〇〇〇담당관 행정6급 〇〇〇 등 12명, 총 48명의 직원이 동일공직을 가지고 가점항목별로 실적기여도에 따라 0.3~1.5 점수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였으며, 또한 2018년 하반기 예산확보(100억이상)에 기여한 〇〇〇〇〇〇 시설6급 〇〇〇에게는 예산확보 실적을 최대 1.5점을 밖에는 부여하지 못하는데도 예산확보 10억미만 0.5점과 100억이상 1.5점으로 이중부여하여 0.5점을 과하게 부과하였음.

2. 인사랑 시스템 근무성적 지도·감독 부적정

- 실적가점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근무성적 감점평정²⁾은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 6점 범위내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담당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기간 중 경고, 훈계, 주의 처분자 명단을 복무담당 관련부서(각종 지원활동을 직접 총괄 주관하는 실·과 포함)에서는 복무상태 불량자, 지시사항 불이행자 등의 명단을 정기평정일 기준 10일전까지 행정과로 통보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근무성적 감점대상 공무원 명단을 해당 실·과·사업소, 읍·면에 통보(정기평정일 기준 5일전까지),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근무성적 감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평정자(실·과·소장, 읍·면장)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 태도란에 해당 감점사항을 반영한 근무성적평정점 산출 및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계획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50점) 중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 평정에서 만점(6점)을 부여한 뒤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준에 따라 감점 하도록 총괄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각부서의 인사행정시스템에서 연도별로 상·하반기에 실시한 실과소 근무평정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 실과소의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 점수는 우선 만점(6점)을 기준으로 감점 사유 발생시 감점규정대로 감점과 감점사유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표 2] 에서와 같이 2015년 하반기에 〇〇〇〇〇 행정7급 〇〇〇의 고객지향태도 점수는 8점을 부여하였고, 2016년 하반기 〇〇〇〇〇 행정6급 〇〇〇에게는

2) 중징계(강등, 정직)는 3.0점, 경징계(견책, 감봉)는 2.0점, 징계에 의한 경고(불문경고)는 1.0점, 일반훈계, 대민불친절은 1.5점, 신분상 주의는 1.0점, 지각 1회당 0.2점 등

6.3점, 2017년 상반기 〇〇〇〇〇 행정7급 〇〇〇는 6.5점을 임의로 부여하였고, 훈계 등으로 실제 감점을 받은 〇〇〇 행정6급 〇〇〇 등 10명은 실제 감점이 되어야 할 점수와 상이하게 감점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근무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실과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인사랑시스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등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으나, 총 95개실과 656명을 0.0점에서 5.9점으로 처리하는 등 임의로 시스템에 감점처리 등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지 않는 등 총괄부서로서 인사랑시스템에서의 근무평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영동군 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행정과

○ 행정상 처분 : 개선, 주의

-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적가점 점수를 이중부여하거나 동일 공직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인사운영 계획 등을 숙지하시고 근무평정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근무평정시에는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근무성적평정 전 부서장 교육을 통하여 실적가점 신청 시 법령에 따른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감점반영 평점이 감점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행정과	행정7급, 강형구 (740-3152)

처분요구서(3)

【제 목】 9988 행복지킴이사업 관리·감독 소홀

【현 황】

연도	사 업 명	사업주관	수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2015	9988 행복지킴이	영동군수	(사)○○○○○ 영동군지회	1,704	416명*1인당 월 20만 원(30시간 활동시)
2016	"	"	(사)○○○○○ 영동군지회	1,954	416명*1인당 월 20만 원(30시간 활동시)
2017	"	"	(사)○○○○○ 영동군지회	2,309	336명*1인당 월22~27 만원(30시간 활동시)
2018	"	"	(사)○○○○○ 영동군지회	2,966	336명*1인당 월27만원 (30시간 활동시)

- 참여자격 : 당해 마을 내 오랫동안 거주하고 건강경륜·친화력 및 봉사정신 높은 어르신
- 사업내용 : 자연마을 내 연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지원하여 상시 돌보는 노인 일자리사업

○ 9988 행복지킴이사업 참여자 생산적 일손봉사 중복참여 내역(2017년)

(단위 : 원)

대상자	생년월일	성별	중복 참여기간	활 동 비 부정수금액	비 고
3명				154,000	
○○○	19○○-○-○○	남	2	44,000	
○○○	19○○-○-○○	여	3	66,000	
○○○	19○○-○-○○	여	2	44,000	

※ 중복참여 세부내역 <별첨> 참조

○ 9988 행복지킴이사업 참여자 생산적 일손봉사 중복참여 내역(2018년)

(단위 : 원)

대상자	생년월일	성별	중복 참여기간	활 동 비 부정수금액	비 고
1명				108,000	
○○○	19○-○-○	여	4일	108,000	

※ 중복참여 세부내역 <별첨> 참조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급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9988 행복지킴이사업 운영지침(2017, 2018년 충청북도)에 따르면 9988행복지킴이는 지킴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일지작성 등 지킴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최종 선발하며, 활동시간은 활동일별 1시간 이상 집중(월 30시간 이상)하며, 활동방법은 주3~4회 서비스 대상 가정방문·하도 거동불편 수혜자는 매일방문, 주말의 경우 전화 확인조치, 거동불편 어르신의 가정은 매일 방문 확인, 활동가능한 어르신으로 경로당이나 마을 내(논, 밭 등 야외)에서 안부를 확인한 어르신은 확인장소에서 지킴이 기본활동은 수행하되, 야외에서 미확인시 가정방문 확인, 경로당 중심의 안부확인 활동 지양 및 경로당에서 안부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주1회 이상은 가정방문하여 안전·위생·불편사항 필히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 행복지킴이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 활동형태 : 2인 1조, 조별 최대 취약노인 8명(가구)을 지원

또한, 9988 행복지킴이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관리를 위한 근무일지 기록확인 및 현장 수시방문 확인, 안전관리, 사업참여 중 자격변동, 부당수령사례 발생 시 대상자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정

보 자료제공, 수혜자 선발과 관련된 정보제공 협조 및 타서비스 중복여부 확인, 예산·회계집행 적정여부 및 자격변동 관리여부 등 수행기관 분기별 지도점검을 확행하여야 함

그리고, 2017, 20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임금)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기간의 활동비(또는 임금)를 회수하고, 당해년도 참여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사실을 통보하며, 참여자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9988 행복지킴이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운영지침 및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2017년~2018년 기간 중 9988 행복지킴이사업 참여자인 ○○○, ○○○, ○○○, ○○○이 9988 행복지킴이 활동일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중복 참여하고, 9988 행복지킴이 일지에는 지킴이 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활동비를 부정 수령하였으나,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업비 262천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9988 행복지킴이사업 참여자 4명에게 중복 지급된 사업비 262천원을 회수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4건 / 262천원(회수)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회수 결정 안내문 발송('19.10.22.) • 9988행복지킴이사업 중복 참여자 지급된 사업비 (262천원) 회수 조치 예정('19.11.2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김유호 (740-3358)

처분요구서(4)

【제 목】긴급(의료)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소홀

【현 황】

○ 긴급지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긴급지원 건 수	긴급지원 금 액	사후조사 기한경과	적정성 심사 기한경과	적정성심사 미 실 시
'15. 4. ~ 현재	729	1,224,308	232	313	222

○ 긴급의료지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심사 요청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구 분	긴급의료지원 *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			심사요청 이행	심사요청 미이행
	대상자	긴급의료금액	비급여금액		
'15. 4. ~ 현재	44	109,875	91,830	11	33

○ 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대 상 자	급여종류	신청일	책정일	월급여액	급여최초 지 급 일	지급액	미지급액
2명						586,710	573,220
○○○	기초생계	16.07.08	16.08.11	709,770	16.08	474,170	235,600 (1개월)
○○○	기초생계	16.01.29	16.03.30	112,540	16.04.	112,540	337,620 (3개월)

○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액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급여종류	부 정 수급액	징수액	미납액	독촉 및 압류현황	비고 (사유발생일)
6명		3,261,557	1,733,990	1,527,567		
○○○	기초생계	299,997	99,990	200,007	-	2017.04.14 (회수중 사망)
○○○	기초생계	321,400	296,580	24,820	-	2017.04.28.
○○○	기초생계	43,400	8,040	35,360	-	2017.06.12. (경북○○○ 전출 /19.02.27)
○○○	기초생계	431,150	348,550	82,600	-	2018.02.08
○○○	기초생계	1,933,600	750,000	1,183,600	-	2019-01-14 (월15만원 / 회수 진행중)
○○○	기초생계	232,010	230,830	1,180	-	2019-03-14 (회수 진행중)

○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급여종류	사망일	급여최종 지 급 일	산출내역	지급예정 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7명					353,430	0	353,430
○○○	시설생계급여	2016.6.12.	2016.5.20.	12*8,166	97,990	0	97,990
○○○		2017.12.8.	2017.11.20.	8*8,280	66,240	0	66,240
○○○		2019.3.6.	2019.2.20.	6*8,312	49,870	0	49,870
○○○		2018.3.6.	2018.2.20.	6*8,280	49,680	0	49,680
○○○		2016.5.7.	2016.4.20.	5*8,166	40,830	0	40,830
○○○		2015.7.4.	2015.6.19.	4*8,050	32,200	0	32,200
○○○		2019.1.2.	2018.12.20.	2*8,312	16,620	0	16,620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의 존재가 부존재하기에 사망자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는 소급지급 불가

○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기초생활보장급여 과다 지급 분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대 상 자	급여종류	사망일자	과 다 지급액	미회수액	독촉 및 압류현황	정상지급액 산 출 내 역
22명	시설생계급여		1,996,760	1,996,760		
○○○		2018.11.15	127,640	127,640	-	15*8,280
○○○		2018.7.14	135,920	135,920	-	14*8,280
○○○		2019.1.14	136,440	136,440	-	14*8,312
○○○		2018.07.25	44,840	44,840	-	25*8,280
○○○		2016.3.26	36,050	36,050	-	26*8,166
○○○		2017.7.18	89,960	89,960	-	18*7,246
○○○		2018.12.19	94,520	94,520	-	19*8,280
○○○		2017.10.18	101,630	101,630	-	18*8,185
○○○		2018.12.27	28,280	28,280	-	27*8,280
○○○		2017.3.20	85,260	85,260	-	20*8,185
○○○		2016.1.18	101,380	101,380	-	18*8,166
○○○		2018.03.14	135,920	135,920	-	14*8,280
○○○		2018.3.10	169,040	169,040	-	10*8,280
○○○		2018.5.28	20,000	20,000	-	28*8,280
○○○		2016.9.25	40,830	40,830	-	24*8,166
○○○		2016.9.14	134,040	134,040	-	14*8,166
○○○		2015.12.28	19,450	19,450	-	28*8,050
○○○		2015.12.25	43,600	43,600	-	25*8,050
○○○		2016.4.20	85,050	85,050	-	20*8,166
○○○		2018.9.17	104,090	104,090	-	17*8,280
○○○		2018.07.05	210,440	210,440	-	5*8,280
○○○		2016.7.24	52,380	52,380	-	24*8,166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긴급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1. 긴급지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소홀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후조사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조사결과 기준초과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법 제14조 및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정성 심사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지원연장과 중단 및 비용반환을 결정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5.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긴급지원 대상 729건 중 232건에 대하여 1개월이 경과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13건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22건에 대하여는 적정성 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아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및 지원연장결정 여부의 판단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긴급의료지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심사 요청 소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 2. 1. 이후 부터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요양기관이 기준에 맞게 진료비용을 산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하였을 경우 환불금을 지급 받아야함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급여진료비 확인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5.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긴급의료지원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33건에 대하여 확인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확인 및 환불금 배분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액 회수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제2항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으며, 소급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미지급 급여 발생 당시 보장기관으로 규정 되어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소급 지급하였어야 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징수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6.3월 및 8월에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생계급여 2건에 대하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결정이 된 달까지의 급여 586,710원을 소급 지급하지 않아 정당한 수급자가 해당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액 6건 3,261,557원 중 1,733,990원만을 징수하여 1,527,567원의 미징수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있음

4.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지급 및 과다 지급 분 회수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 기준일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상 매월 15일 기준으로 급여가 생성되어 16일 이후에 사망한 자는 월 지급액 전액을 지급한 후 익월에 일수 계산하여 과다지급액은 회수하여야함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보장시설입소 사망자에 대한 시설생계 급여는 월급여 지급 기준일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고, 15일 이전에 급여 생성으로 전액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익월에 일수 계산하여 회수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7명 353,430원을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2명 1,996,760원은 15일 이전에 급여가 생성되어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 일단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익월에 회수하지 않아 미납액으로 남아있음에도 회수를 위한 독촉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적정성 심사 미실시 222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시고,
-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33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조속히 요청하시고,
-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결정이 된 달까지 미지급 된 생계급여 2건 573,220원을 지급하시고,
-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액 6건 3,261,557원 중 미징수 한 6건 1,527,567원을 회수하시고,
-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기초생활보장급여 과다 지급 분 22건 1,996,76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보장시설입소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28건 / 3,524,327원(회수), 2건 573,220원(추급)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긴급지원대상자 선지원 결정 건에 대하여 매월 1회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지연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의료비 지원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 150만원 이상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 요청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고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적정성심사 미실시 222건에 대한 심사 : 2019.10.31.	주민복지과	행정8급, 박미나 (740-3084)
• 향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환수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추가급여 지급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안용현 (740-3566)
• 보장시설입소 사망자 기초생활보장급여 미지급 과다 지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예정 ('19.10.31.)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박은실 (740-3565)

처분요구서(5)

【제 목】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위반 및 장애수당 업무추진 소홀

【현 황】

○ 장애인자동차표지 미회수 현황

(단위 : 건)

기 간	유효발급	미 회 수			비 고
		계	사 망	장애인자격종지	
'15. 4.~'19.4.	1,783	53	49	4	본인용 37, 보호자용1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

(단위 : 건, 천원)

기 간	체 납		미 압 류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5. 4.~'19.5.	8	1,021	5	560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대상자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급결정일	미지급액 ('19. 5. 31. 기준)	미지급액 산출내역
계	2명			1,760	
○○○	청각(청력)	4급	'16.09.19.	1,320	40천원 × 33개월
○○○	뇌병변	4급	'17.12.27.	440	40천원 × 8개월 ('18. 9월~, '19. 4월) 20천원 × 6개월 ('18. 3월~8월 시설입소 시) ※ '19. 5월은 수급종지로 장애수당 미대상

【지적내용】

1.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및 발급 사무위임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1.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읍·면·동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장애인 사망 또는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유효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2015. 4. ~ 2019. 4. 발급) 받은 1,783명 중 49명은 사망하고, 4명은 장애인 자격중지 되었는데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총 53개를 회수하여 폐기하지 않았음에도 읍·면에서 회수토록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과 제27조제2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법 제17조제4항과 제27조제3항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제2항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3항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5. 9. 7.부터 2019. 1. 18.까지 체납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건 1,021천원 중 5건 560천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장기간 체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수당 지급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수당의 당연적용 대상자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 결정일에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기존 등록 장애인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장애등급 결정일 부터 지급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6~2017년도에 장애등급이 결정된 2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결정일 부터 감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수당 1,760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정당한 수급자가 해당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사망 및 장애인자격 중지자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53개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5건 560천원 징수를 위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결정일 부터 감사일이 속한 달까지 미지급된 수당 1,760천원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2건 / 1,760천원(추급)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등을 지속적으로 발부하고 고질 체납자인 경우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장애인전용주차표지관리에 있어 당사자 사망 자격중지 등 회수사유 발생 시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폐기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7급, 강희찬 (740-3572)
• 장애수당 미지급대상자 2명중 1명에게는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완료(19.06.20.)하였으며, 미지급된 1명에게는 급여상계 절차에 따라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안용현 (740-3566)

처분요구서(6)

【제 목】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 회수 업무 소홀

【현 황】

○ 직역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현황

(단위 : 천원)

대상자 (명)	회수대상액 (회수액)	사실을 안날	자격중지 통 지 일	납입고지	납 부 독촉 등	비 고
141	183,582 (4명 5,149)	2015. 10. 19.	2015. 11. 20.	미실시	미실시	

※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자로 연금 수령자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년부터 직역연금 관련 회수대상자 141명 183,582천원에 대한 회수를 추진하고 있음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기초연금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4조,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따르면 군수는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복-e시스템으로 소득·재산변동사항을 통보 받으면 확인·조사하여 14일 이내에 회수대상자로 결정하고→ 납입고지(납입기한 30일) → 납부독촉(납입기한 30일 이상)하여야 하고 미납시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영동군에서는 2015.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역연금 수령자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2014. 7월부터 지급 중지일 까지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통보일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137명 178,433천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납입고지, 회수를 위한 납부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한 기초연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대하여, 영동군에서는 2014.07.01. 기초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동시 수급자의 회수대상액이 발생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간 행정착오에 의한 전산미통보로 제도변경 후 17개월(2014.07.~2015.11.)간 전국적으로 약 38,000명의 기초연금이 과오 지급되었고
- 2015.10.19일이 되어서야 보건복지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 및 조치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통보에 의해 2015. 11. 20. 영동군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141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중지결정을 하고 중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 회수대상자(141명/183,582천원) 대부분은 생활고로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계층으로 1인 평균 1,300천원(부부가구의 경우 최고액 5,400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중지결정과 아울러 회수결정을 했어야 하나 격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수결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 이에 회수대상자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회수저항이 적은 방법을 여러모로 검토 중 인사이드 등 기타상황에 의해 회수가 지연되었으며, 2019.05월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를 기 실시하였으며 읍·면 합동회수반을 편성하여 2019.06.17일부터 가가호호 대면안내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영동군에서 제출한 의견 및 그동안의 감사사례를 감안하여 살피건데, 이 건

기초연금의 회수가 발생한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상 민원인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회수가 장기간 지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되므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직역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에 대해 잘못 지급된 후 납입고지, 회수를 위한 납부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초연금 178,433천원을 조속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137건 / 178,433천원(회수)

○ 신분상 처분 : 5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 회수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상계처리 또는 반납 받아 회수금액 178,433천원 중 38,740천원(21.7%)을 회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회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김영광 (740-3588)

처분요구서(7)

【제 목】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지출업무 지도·감독 소홀

【현 황】

○ 퇴직금 미적립 시설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시 설 장	미적립 인원	비 고
2개 시설		20	
○○○○○○○○공동생활가정	○○○	6	‘18~’19년 채용
○○○노인요양원	○○○	14	‘12~’19년 채용

※ 상기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급 사유 발생 시 운영비 또는 차입금으로 임시변통하여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현황

(단위 : 원)

시 설 명	시 설 장	대 상 자	중간정산일	중간정산금액	중간정산사유
2개 시설		5명		15,153,664	
○○○○노인 공동생활가정	○○○	○○○	2017.12.31.	5,311,827	일반연금보험전환
○○○○노인 공동생활가정	○○○	○○○	2017.12.13.	8,191,217	일반연금보험전환
○○○ ○○	○○○	○○○	2018.3.22.	693,100	연금가입 전 중간정산
○○○ ○○	○○○	○○○	2018.3.22.	487,720	연금가입 전 중간정산
○○○ ○○	○○○	○○○	2018.3.22.	469,800	연금가입 전 중간정산

※ ○○○ ○○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매년 연초에 중간정산 실시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시 설 장	대 상 자	적 립 액	반납(여입)여부	비 고
2개 시설		2명	1,400		
○○노인요양원	○○○	서 명 길	500	부	
○○요양원	○○○	김 옥 순	900	부	

○ 보육시설 4대 보험료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시 설 명	연도별	납부기한 경과건수	연체금 납부액	비 고
3개 시설		15	444,960	
○○○○○어린이집	'17	6	305,360	보조금
○○어린이집	'17 ~ '18	6	97,090	"
○○ 어린이집	'17 ~ '18	3	42,510	"

○ 노인 복지시설 4대 보험료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시 설 명	연도별	납부기한 경과건수	연체금 납부액	비 고
4개 시설		25	578,470	
○○○○○요양원	'17	1	5,880	자부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8	1	2,500	"
○○○○○요양원	'18	1	26,690	"
○○○요양원	'17~ '18	22	543,400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서는 노인요양시설 29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과에서는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1.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운영 지도·감독 소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중간정산 시행 및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퇴직금을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가하였어야 함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에서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에서 근로자 ○○○외 4명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음에도 15,15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요양원에서 2명의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1,400천원에 대하여 시설회계로 여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지출업무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에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제28조에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계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4대 보험료 외의 연체금이 추가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
-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 3개소에서 16건 444,960원, ○○○○과에서 관리하는 노인 복지시설 4개소에서 22건 578,470원의 4대 보험료 연체금을 시설회계에서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의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원의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2건 1,400,000원 대하여 시설 회계로 회수하여 주시고,
- 4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을 추가 지출한 보육시설 3개소 16건 444,960원을 회수하시고, 노인 복지시설 4개소 22건 578,47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40건/ 2,423,430원(회수)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보험료 연체금을 시설계좌로 여입하도록 조치하겠음 ('19.10.31.) •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지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박은실 (740-3565)
• 연체금 지출 16건에 대한 444,960원 회수 완료하였음.	가족행복과	행정7급, 김미선 (740-3762)

처분요구서(8)

【제 목】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등 추진 소홀

【현 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체 납		미 압 류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9	61,326	19	61,326	
‘10 ~ ‘15	14	57,547	14	57,547	
‘16	1	360	1	360	
‘17	4	3,419	4	3,419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결과 통보 현황

(단위 : 회, 건)

연 도	심의위원회			연장승인심의			결과 통보	결 과 미통보
	소계	대면	서면	소계	승인	조건부		
계	29	-	29	3,535	3,407	128	136	3,399
‘15. 4. ~ 12.	5	-	5	639	635	4	0	639
‘16	5	-	5	891	880	11	0	891
‘17	4	-	4	771	763	8	0	771
‘18	11	-	11	1,068	977	91	0	1,068
‘19. 1. ~ 4.	4	-	4	166	152	14	136	30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급하는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

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한편,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부당이득 확인 및 결정, 납부통지, 납부독촉, 압류, 공매처분, 징수금액처리, 종결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이득으로 확인 및 결정한 19건 61,326천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결과 통보 소홀

- 영동군 ○○○○과에서는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자의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한편,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수급권자의 연장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였어야 함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5. 4월부터 2019. 4월까지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3,535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승인 3,407건, 조건부연장승인 128건으로 심의하고 2019년 2월과 4월에 심의한 136건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5. 4월부터 2019. 4월까지 심의한 3,399건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연장 승인 및 불승인에 대한 사유, 회차,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승인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승인결과에 따라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19건 61,326천원 정수를 위한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수를 위한 독촉 및 재산조회 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추후 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또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자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를 2월부터 현재까지 7회 실시하였으며, 추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행정7급, 전민아 (740-3573)

처분요구서(9)

【제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정산검사 미 실시

【현 황】

○ 정산검사 미 실시 내역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내역(천원)			보조사업자	비 고
		보조금	지출액	잔액		
계	2개사업	327,540	311,200	16,340		
1	2016 ○○○○○영동○○○○센터 운영사업	165,440	152,992	12,448	○○○○○ ○○체육센터	
2	2017 ○○○○○영동○○○○센터 운영사업	162,100	158,208	3,892	○○○○○ ○○체육센터	

※ 2015년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조사업 추진(보조사업자 동일)

【지적내용】

- 영동군 ○○○○○과(구,○○○○○○실)는 「지방재정법」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영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영동군 ○○○○체육과(구,○○○○○○실)에서는 위 보조금 정산검사 미 실시 내역과 같이 2개 사업 327,540천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지출증빙서류 없이 집행내역 및 통장사본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위 법령에 따라 세부 항목별 경비는 당초 계획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목적 외로 사용된 경비는 없는지 여부, 지출증빙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여부,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정산검사조서를 사업별로 작성·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실
- 행정상 처분 : 시정
 -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검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실시하고 보조금 확정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정산검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2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2016, 2017 ○○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정산검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음.	국악문화체육과	행정8급, 김희민 (740-3233)

처분요구서(10)

【제 목】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 관리 감독 소홀

【현 황】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현황

연번	야영장명	대표자	등록일자	소재지	비고
1	○○관광지	○○○	2015.4.27	영동군 ○○면 ○○로 105	
2	○○○○자연 휴양림야영장	○○○	2015.6.18	영동군 ○○면 ○○○길 60	
3	○○○○○	○○○	2015.6.25	영동군 ○○면 ○○○○로 1212	
4	○○캠핑장	○○○	2015.7.20	영동군 ○○면 ○○길 239-51	
5	○○○○○○○	○○○	2015.8.17	영동군 ○○면 ○○○길 57	
6	○○캠핑장	○○○	2016.1.6	영동군 ○○면 ○○○○로 980	
7	○○○○○	○○○	2016.11.29	영동군 ○○면 ○○로 321	
8	○○○○○ ○○○펜션	○○○	2017.6.23	영동군 ○○면 ○○6길 8-1	
9	○○펜션 캠핑장	○○○	2018.3.12	영동군 ○○면 ○○○○로 896	

【지적내용】

- 영동군 ○○○○○○○과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별표 1)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9개소 야영장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야영장업

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미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야영장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가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국악문화 체육과	행정7급, 김진 (740-3213)

<별표 1>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 7 관련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양식)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점검일자	년 월 일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구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해당없음 中 택1)
안전 관리	진입로 및 대피로에 적치물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해물은 없는가?	
	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 등의 정보 및 게시판 상태는 양호한가?	
	침수위험은 없는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	
	옹벽, 절벽, 급경사지 등의 붕괴 위험이나 산사태·토사류, 낙석의 위험은 없는가?	
	추락·낙상 방지용 난간 및 배수로 덮개 상태는 양호한가?	
	구급함, 소화기, 소화기는 배치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가?	
	전선 피복 노출 여부, 감전위험, 누전차단기 작동 등 전기시설 상태는 안전한가?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개소는 없는가?	
	배관의 부식 상태 및 미사용 배관 막음처리 등 가스시설 상태는 안전한가?	
	야영장 야간 조명 및 CCTV 운영·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각종 주의·금지·위험 게시판은 적재적소에 양호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가?	
	관리요원은 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야영 한계선 밖 야영 금지 및 텐트 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야영장내 숯불·담배불 잔물처리는 잘 되어있는가?	
환경 위생 관리	소화수(방화사)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있는가?	
	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샤워실, 개수대, 취사장 등 공동구역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식수는 음용적합 유효 기간 이내이며 기타 요인에 의한 오염은 없는가?	
특기 사항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이 방치되어있지 않는가?	

처분요구서(11)

【제 목】 제48회 ○○○○○○축제 지도·감독 소홀

【현 황】

○ 인건비 지급 부적정 현황

대상자	기 간	금 액(천원)	과 목	비 고
계		22,400		
사무국장 ○○○	2015.5~12(8개월)	14,400	기타운영비	근무일지, 근무내역 등 증빙자료 없음
간사 ○○○	2015.5~12(8개월)	8,000	기타운영비	

※ 보조사업 신청 시 세부내역 없이 기타운영비 22,400천원으로 사업 신청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제48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를 위하여 ‘난계기념사업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 2 및 6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영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부담액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사업회에서 기타 운영비로 22,400천원을 아무런 산출내역 없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검토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으며, 정산검사를 실시 하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같은 단체운영비³⁾는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 14,400천원(월 1,800천원), 간사 ○○○ 8,000천원(월 1,000천원)의 인건비를 근무일지, 근무내역 등과 같은 증빙자료 없이 거래내역확인증(입금내역)만을 첨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검사를 마무리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보조사업 추진 시 관계 법률을 명확히 숙지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상근 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3)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원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축제관련 영동축제관광재단과의 연찬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국악문화체육과	행정6급 여준석 (740-3212)

처분요구서(12)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정정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정정 내역 (별표)

기 간	발 급 처	합 계		세대 초과소유		개인 초과소유	
		건수 (필지)	면적(m ²)	건수 (필지)	면적(m ²)	건수 (필지)	면적(m ²)
'15.4 ~ '18.12	○○면 등 9 ○○사무소	53	30,395.4	30	20,023	23	10,372.4

【지적내용】

- 영동군(○○면 등 9개 읍면)에서는 2015~2018년 기간 중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한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세대원(또는 개인)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이 1,000㎡ 이상인 자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53건을 발급하였다.
-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상한) 제3항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을 신청할 경우 세대원 전부의 명의로 과거 취득농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000㎡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한 자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또는 농지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요구서(13)

- 그런데, 영동군(○○면 등 9개 읍면)에서는 별표와 같이 동일 세대(또는 개인)의 주말·체험영농 합산면적이 1천㎡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53건에 대하여 세대(또는 개인)가 신청한 주말·체험영농목적의 합산면적이 1천㎡ 이상인지 등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고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읍, ○○면
- 행정상 처분 : 시정
- 영동군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자경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농지법 제7조 제3항(농지소유상한)에 따라 면적의 소유상한 등을 확인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농업경영계획서 및 자경여부 등 확인 : 2019. 10.31까지 •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농지법에 따라 면적의 소유상한 등을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정과 *11개 읍·면	농업7급, 이준호 (740-3453) *산업팀장

【제 목】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보조대상자 선정 부적정

【현 황】

□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현황(별표)

사업연도	지원대상 (경작규모)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업대상자	부적정 사유
2017년	10,000㎡ 이하 중소농 농가	75명	8명	경작규모초과

※ 지원단가 : 450천원 한도 / 대당

【지적내용】

- 영동군(○○과)는 농촌 고령화 및 부녀자의 작업능률 제고로 안전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중규모 경작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작규모 10,000㎡이하 중소농을 대상으로 2017년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7 유기농산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공급 대상자 선정시 사업 취지에 맞도록 도내 거주 경작규모 10,000㎡ 이하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농촌지역 부녀자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 영동군(○○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7년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대상(10,000㎡ 이하)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된 면적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보조사업 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신청서상의 면적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지원대상 면적 초과자도 선정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8명을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하는 등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공급사업 보조대상자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지원자격 미충족자가 농업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앞으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집행잔액 발생 시에도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정과	농업9급, 조동찬 (740-3464)

처분요구서(14)

【제 목】 쌀소득보전·발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농지전용 필지의 직불금 지급 부적정 현황(별표)

구 분	필 지 수	직불금 지급 부적정 면적(㎡)	부적정 지급액(원)
합 계	91	63,480	3,870,800
‘17 ~ ’18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4	고정 변동 17,849 1,807	고정 변동 1,658,600 142,450
‘17 ~ ’18 발농업직접지불제	67	43,824	2,069,750

【지적내용】

- 영동군(○○과)에서는 쌀 재배 및 발농업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17년 ~ ’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지불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동 대상필지 대량검증,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쌀소득보전·발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쌀소득보전·발농업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및 지급면적을 확정하되 농지처분명령이나 농지전용 등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필지는 우선 검토하여 제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처분요구서(15)

- 그런데, 영동군(○○과)에서는 '17년 ~ '18년도 쌀소득보전·발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상기 별표)와 같이 사업지침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농지전용된 91필지(63,480㎡) 소유자에게도 직불금 3,870,8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농지전용한 필지에 직접직불금이 지급된 3,870,800원을 회수하시고,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91건 / 3,870,800원(회수)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2017년~2018년 쌀·밭고정직불금 부당수급자 환수 통지서(고지서) 발송('19.10.24) • 농지전용 필지 부적정 지급 직불금(3,870,800원) 회수 조치 예정('19.11.8.일까지) •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에 2017년 쌀·밭고정직불금 부당수급자 환수조치 통보('19.11.8일까지 환수조치)	농정과	농업7급, 강민규 (740-3462)

【제 목】 건설기계 조종면허 미소지자에게 보조금 지급 업무 소홀

【현 황】

□ 건설기계(로우더) 조종면허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보조금교부결정일	기계구입일	면허취득일
			계	보조	자담			
합계		3대	152,900	30,000	122,900			
'17 가축분뇨처리 스킨드로다 보급사업	○○○	1대	40,700	10,000	30,700	'17. 6.16	'17. 7.11	'15. 7.13
	○○○○	1대	57,200	10,000	47,200	'17. 6.16	'17.11.17	미취득
'18 가축분뇨처리 스킨드로다 보급사업	○○○	1대	55,000	10,000	45,000	'18. 9. 3	'18.10.16	미취득

※ 지원기준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지적내용】

- 영동군(○○과)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축산농가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용 스킨드로다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스킨드로다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및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다.
- 따라서, 영동군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고,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건설기계 조종면허 미 소지자에게 그 기계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영동군(○○과)은 상기 현황과 같이 '17년, '18년 보조사업 추진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는 자들이 2대('17년 1대, '18년 1대)의 로우더를 구입하여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들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소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보조사업자가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앞으로 보조사업자의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소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미소지 보조사업자(2명)에게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 되도록 안내토록 하겠음. • 금년 보조사업 추진은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소지 확인 후 사업 시행 중임.	농정과	농업9급, 김은영 (740-3493)

처분요구서(16)

【제 목】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건축물 재산권 확보 소홀

【현 황】

□ 2015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건축물 현황

보조사업자	사 업 량	총 사 업 비(천원)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등재 및 소유권 확보일	
		계	보조	자담	용 도	면 적 (㎡)	건축물 대 장	등기부 등 본
○○○ 외 2	농산물 가공 시설 등 4종	101,048	50,000	51,048	창고시설 제조업소	96.25 62.00	'16.11.28	'16.12.13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 군비 50%, 자담 -%

【지적내용】

- 영동군(○○○○○○)은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창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2인 이상의 농가를 지원하는 2015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제3항은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과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농업분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영동군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15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시범사업으로 신축한 창고시설 및 제조업소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었음에도 '15. 10. 6일 현지 확인만으로 '15. 10. 29일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15. 12. 24일 보조금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와 취득한 중요재산의 소유권 등기 및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시정

- 농업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시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및 보조사업 정산 전에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 치 계 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향후 농업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시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및 보조사업 정산 전에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윤상훈 (740-5533)

처분요구서(17)

【제 목】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필수 지원자격 미확인

【현 황】

□ 지원자격 필수사항 미확인 현황

사업 연도	교 육 신청자	과 정 명	모집분야	1인당 사업비	필수 자격요건 확인 여부	
					도내 거주 (실 거주 3년)	영농종사 (3년 이상)
합계	3명					
2018	○○○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양봉과학	2,750천원 (보조2,250,자담500)	미확인	미확인
2018	○○○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양봉과학	2,750천원 (보조2,250,자담500)	"	"
2018	○○○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양봉과학	2,750천원 (보조2,250,자담500)	"	"

【지적사항】

- 영동군(○○○○○○)은 농업경영 및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통해 국제화·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분야 CEO 육성을 위해 '18년 3명에게 8,250천원(2,750천원/1인당)을 지원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충북대학교) 교육을 추진하였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2018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모집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모집 대상으로 정하면서 상기 조건을 '필수'로 명시하였고, 증빙서류로는 '농업경영 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농사확인서, 기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라 하였다.
- 따라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 첫째 필수 지원자격인 '도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 영농경력 3년 이상인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지원한 3명에 대하여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모집계획」 공문에서 명시한 필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필수 증빙서류(농업인경영체등록부, 농지원부 등)또한 요구하지 아니한 채 충청북도 ○○○○○으로 추천한 결과 3명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32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주의

- 영동군○○○○○○에서는 농업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침에서 정한 필수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여,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향후 농업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침에서 정한 필수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수빈 (740-5523)

처분요구서(18)

【제 목】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현 황】

○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 세 구 분	건수	합계	취득세 부과 누락 세액		
				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3종	29	40,477,740	36,626,610	2,568,050	1,283,080
1	상 속 재 산	16	35,468,450	32,023,400	2,161,970	1,283,080
2	토 지 지 목 변 경	12	4,403,190	4,052,210	350,980	0
3	지 하 수 시 설	1	606,100	551,000	55,100	0

※ 추정 명세 : [붙임 1] * 엑셀 서식으로 따로 붙임

【지적내용】

- 영동군 세정과에서는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및 과세자료제출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내역, 상속재산내역, 대법원통보자료, 지목변경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확인·대사하여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 2014. 10. 30. '00읍 00면 00리 000번지 토지 0,000㎡ 외 1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000'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속인 등에게 취득세 334,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16건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35,468,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 2018. 2. 28. '00면 00리 000-00번지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어야 할 대체산립조성비를 누락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000000(주)'에 대하여 취득세 247,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12건의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4,403,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 급·배수(지하수시설:관정)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지하수 : 관정) 시설을 2018. 10. 19. '00면 00리 000번지'에 취득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부과 대상임에도 감면대상인 농업용으로 잘못 적용하여 '000000000'에 대하여 취득세 606,1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직권부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40,477,74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대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29건 / 40,477,740원(추징)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민원과 의뢰 재산조회 완료 • 읍·면 공문발송으로 상속대상자 조회 완료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40,477천원) 부과 완료	재무과	세무8급, 장시훈 (740-3256)

처분요구서(19)

【제 목】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현 황】

○ 취득세 추징 누락 현황

(단위 : 원)

연번	감면구분	건수	합계	취득세 추징 누락 세액		
				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4종	16	207,735,790	194,189,620	-2,555,530	16,101,700
1	자경농민	6	3,272,500	2,869,450	246,280	156,770
2	귀농인감면	7	7,197,660	6,495,530	555,090	147,040
3	창업중소기업	1	103,990,200	91,986,000	4,005,600	7,998,600
4	물류단지감면	2	93,275,430	92,838,640	-7,362,500	7,799,290

※ 추징 명세 : [붙임 2] * 엑셀 서식으로 따로 붙임

【지적내용】

○ 영동군 세정과에서는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4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경농민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및 귀농일의 주민등록소재지를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또는 100분의 75)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자경농민과 귀농인, 창업중소기업, 물류단지내 사업자가 취득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였을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매각 또는 해당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감면조건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1. 자경농민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내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취득세 추징 누락

○ 2016. 3. 23. '00면 000리 00-0번지 답 0,000㎡'를 취득한 '000'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농지의 취득일부터 주소이전 등 전입없이 000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경농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기 경감한 취득세 289,6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자경농민 감면조건을 위반한 6건 3,272,5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2. 귀농인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내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취득세 추징 누락

○ 2017. 10. 10. '00면 000리 000-0번지 답 0,000㎡'를 취득한 '000'은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를 00시 00에 거주하여 감면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기 경감한 취득세 1,119,9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귀농인 감면조건을 위반한 7건 7,197,660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3. 창업중소기업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내 매각, 임대) 취득세 추징 누락

○ 2015. 11. 6. '00면 00리 000번지의 19필지 00,000㎡'를 취득한 '(0)00'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 0. 00. 매각하여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기 경감한 취득세 등 103,990,2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4. 물류산업단지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내 매각, 임대) 취득세 추징 누락

○ 2016. 3. 28. '00면 00리 000번지 0000.0㎡'를 취득한 '(0)00000'가 물류사업으로 사용할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 0. 00. 현재까지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기 경감한 취득세 등 14,910,7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물류단지 감면조건을 위반한 2건 93,275,430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권고

-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누락된 취득세 등 총 207,735,790원을 추징하기 바라며,

- 앞으로 납세자의 취득세 감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16건 / 207,735,790원(추징)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자경농민 2년 이내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등 조회 •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취득세 207,735천원 추징완료	재무과	세무8급, 장시훈 (740-3256)

처분요구서(20)

【제 목】 하천점용료 관리 및 부과·징수 소홀

【현 황】

○ 하천점용료 부과현황 및 수납현황 (단위 : 원)

사망자 수	구분	합계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2	2,526,410	121	2,275,100	21	251,310
36명	2015	39	729,200	38	729,200	1	-
	2016	35	589,500	34	553,260	1	36,240
	2017	36	720,250	28	591,620	8	128,630
	2018	16	288,310	12	255,700	4	32,610
	2019	16	199,150	9	145,320	7	53,830

【지적내용】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및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영동군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따라서 하천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의 책임이 있는 관련부서에서는 부과·징수업무를 확인하고, 점용허가의 점용료가 체납되면, 현지 사실확인을 통하여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체납액에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 영동군의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위 현황과 같이 2015년도 이후 142건이 부과되었고, 2019년도까지 21건의 체납액이 남아있는 등 감사일인 2019.6.13. 현재 지속적으로 체납되어 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점용료 등을 000에게 부과하고 있는 등 점용허가관리 및 부과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처분요구서(21)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는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적 급부행위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액 발생이 없어야 함에도
- 영동군 안전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천점용료에 대한 000 허가대장 관리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련한 체납액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체납액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0과
- 행정상 처분 : 개선, 주의
 - 하천점용계약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정당한 대부자에게 부과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체납징수를 위하여 분기별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승계처리 통보알림” 기능(시스템 개선)을 추가하여 사망자에 대한 점용허가가 승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6급, 정재욱 (740-3902)

【제 목】농정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현 황】

〈표 1〉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지방비 중 자비부담률 50% 미만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계약 방법	부적정 집행액	부적정 추진사유
계	3개 사업	4명		126,659	
○○과	2015년 ○○ ○○○ 지원 사업 등 3개사업	○○○○ ○○○○○ 등 4명	1인 수의 계약	126,659	• 1인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 준수 미명시

【지적내용】

- 영동군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권장할만한 사업에 대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를 교부·집행한 바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지방비)

1.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사업비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 준수 미명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18.9.27)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9. 4.18) III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402-02)에 따르면,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예외사항을 규정한 각 호에는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18. 12.24)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입찰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 수의계약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대통령령 27491호, 2019. 2. 4.)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2. 1)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밖의 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대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함)에 안내공고를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

정하였어야 하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으로 ‘2015년 ○○○○○ ○○○○’ 등 3개 사업, 126,659천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G2B에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입찰 및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하였어야 하며,
- ‘2017년 ○○○○○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인 ‘2015년 ○○○○○ ○○○○’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126,659천원을 G2B에 공고를 거쳐 일반입찰 및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사업 추진을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 ‘2017년 ○○○○○ ○○’ 사업은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1인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및 분할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표 2〉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및 분할 1인 수의계약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역	집행액	계약 상대자	부적정 추진사유
○○ ○○ ○○	2016년 ○○○○○○ ○○○○○○ 시범사업	○○○○○○ 연구회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30,000	○○○	· 전기공사 미분리발주
	2017년 ○○○○○○○○ ○○○○○○ 시설 시범	○○○	자연환기 유도형 비가림시설	22,005	○○○	· 분할 1인 수의계약
			관수시설	3,000	○○○	
		○○○	자연환기 유도형 비가림 시설	22,004	○○○	
			관수시설	3,001	○○○	

▼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부적정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법」(법률15576, '18.10.18)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따라 분리발주 예외사항(①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②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③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도,
- 영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인 ○○○○○○ ○○○가 상기와 같이 ‘2016년 ○○○○○○ ○○○○○○ 시범사업’ 중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30,000천원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에 일괄계약을 추진하며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았고 ‘○○○’가 ‘○○○○’에 10,000천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불법하도급을 하여 사업을 추진함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

▼ 분할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1인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물품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통합발주를 통해 2인 이상 수의전적 입찰로 G2B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에서는 ‘분할 1인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2017년 ○○○○○○○○ ○○○ ○○○○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 보조사업자 ○○○ 외 1명이 ‘○○○○○ ○○○ ○○○ ○○’과 ‘○○○○○’을 분리 발주하여 50,010천원의 사업비를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국비)

《표 3》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국비)

(단위 : 천원)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계약 방법	부적정 집행액	부적정 추진사유
계	9개 사업	9명		1,762,908	
○○○	2016년 ○○○ ○○○○○○○ ○○○○○○○ 사업 등 6개 사업	○○○○○ 등 6명	1인 수의 계약	1,134,373	· 1인 수의계약 체결
○○ ○○ ○○	2016년 ○○○ ○○○○○○○ ○○○○○○○ 등 3개 사업	○○○○○ 등 3명	"	628,535	

3. 수의계약 체결(1인) 부적정

- 舊「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2016. 1. 1.)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계약금액을 규정한 각 호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舊「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5호. 2017. 1. 1.)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방법을 규정한 각 호에는 조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아울러, 舊「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91호. 2016. 1. 1.) 제18조의3(보조사업 관련 계약)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5천만원 초과 물품, 용역, 2억 초과 시설공사, 전문공사 등 1억 초과)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에서는 ‘2016년 ○○○○○○ ○○○○ ○○사업’ 등 6개 사업, 사업비 1,134,373천원, ○○○○○○에서는 ‘2016년 ○○○○○○ ○○○○○○’ 등 3개 사업, 사업비 628,535천원을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시설공사, 용역·물품 등은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보조사업자가 공고·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하였어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에서는 ‘2016년 ○○○○○○ ○○○○ ○○○사업’ 등 6개 사업, 사업비 1,134,373천원 및 ○○○○○○는 ‘2016년 ○○○○○○ ○○○○○○’ 등 3개 사업, 사업비 628,535천원을 추진하며

- 보조사업자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체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규정된 데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 추진을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 행정상 처분 : 주의

- ○○○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자비부담률 50% 미만 지방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일반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입찰, 1인 수의계약 등 보조사업자의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 ○○○○○에서는 전기공사 발주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 아울러, 국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 위탁체결 등의 계약방법을 교부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시고 이를 보조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등 계약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일반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 1인 수의계약 등 보조사업자의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겠음.	농정과	농업8급, 박수정 (740-3463) 행정7급, 이수호 (740-3473) 농업8급, 김도희 (740-3484) 농업7급, 윤영만 (740-3492) 농업9급, 김은영 (740-3493)
• 향후 지방계약법등 계약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등을 시행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경민 (740-5563)
• 전기공사 발주 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윤상훈 (740-5533)

처분요구서(22)

【제 목】 전문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집행 부적정

【현 황】

□ 전문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전문건설 등록업종
	8건		147,898		
○○○○○○	○○○○○ ○○○○○ ○○○공사	2018.03.05	20,852	○○○○○	미등록
○○○○○○	○○○○○ ○○○○○ ○○○공사	2019.03.06	18,810	○○○○○	"
○○○○○	○○○○○ ○○○○○○설치	2015.06.08	19,517	○○○○○	"
○○○	○○○○ ○○ 공사	2018.10.10	19,400	○○○○○	"
○○○	○○○○○○ ○○○○ 공사	2017.06.20	20,083	○○○○○	"
○○○	○○○ ○○○○ ○○○ 설치공사	2017.12.09	15,640	○○○○○	"
○○○	○○○ ○○○○ ○○○ 설치공사	2018.11.14	15,916	○○○○○	"
○○○	○○○○○○ ○○ ○○ 공사	2016.10.04	17,680	○○○○○	"

【지적내용】

- 영동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감사기간인 2015년 4월 이후 152건, 3,543,124천원의 공사예정금액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720호, 2019. 2.15.)(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 등 5개 기관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영동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예정금액 15,000천원 이상의 전문공사 도급계약 152건의 공사업체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등 5개 기관에서 체결한 8건, 147,898천원의 전문공사 도급계약을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체와의 시공은 건축분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 ○○○, ○○○
- 행정상 처분 : 주의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5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를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겠음. •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박성용 (740-5513)
	시설사업소	행정7급, 정지윤 (740-5983)
	영동읍	사무운영7급, 조현실 (740-5672)
	황간면	행정8급, 김재근 (740-5744)
	용화면	행정7급, 김영수 (740-5843)

처분요구서(23)

【제 목】 보조금(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현 황】

□ 보조금 부적정 예산편성현황(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천원)

연도	부서명	사업명	금액	비고
계		56개 사업	15,361,241	
2015	○○○○○ 등 10개 부서	○○○○○○○○○○ 사업 등 25개 사업	5,762,823	심의 미 실시
2016	○○○○○ 등 8개 부서	○○○○○○○○○○ 사업 등 39개 사업	5,705,381	"
2017	○○○○○ 등 3개 부서	○○○○○○○○○○ 사업 등 5개 사업	2,306,999	"
2018	○○○○○ 등 6개 부서	○○○○○○○○○○ 사업 등 12개 사업	1,586,038	"

※ 세부내역 별첨

【지적내용】

- 영동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동군 사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단체와 민간에 보조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 「지방재정법」(법률 15803호, 2019. 4.17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한다.

- 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호, 2017.9.25)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9.3.25 시행,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성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영동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 ~ 2018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56개 사업 15,361백만원을 “영동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사전 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주의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람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향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기획감사관	행정7급, 김혜진 (740-3064)

처분요구서(24)

【제 목】 징계자 및 교육파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표 1〉 교육파견자 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교육과정명	대상자	지급수당 명세	지급액	회수액
○○○○○○○ 과정 등 10개 과정	○○○ 등 28명	1.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세무, 예산수당) 2.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7,282,570	5,328,210

※ 세부내역 별첨

〈표 2〉 징계자 정근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처분일	징계	직급	성명	지급액	지급월	회수액
2016.12.30	견책	○○ 8급	○○	356,260	2017년 1월	356,260

【지적내용】

1. 교육파견자 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 영동군에서는 조직의 성과창출과 창의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 ‘중견간부 양성 과정’ 등 장기 교육과정에 소속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81호, ‘19. 1. 8) 제14조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19. 1.28.)은

수당 등의 지급방법으로 국내 파견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아울러,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의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57호, ‘18. 9.27.) 제4조(기준경비) 제2호에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으며,
- 별표 2의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등)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립보호직원 포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타 특정업무경비(세무수당, 예산수당 등) 지급대상과 금액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급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19. 4. 18.)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에 대해 파견,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30일 이상 교육 파견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 등 10개 교육과정에 1개월 이상 파견된 ○○○○○○ ○○○ 등 28명에게 5,328천원의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세무·예산수당)와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2. 징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영동군은 2016년 ○월 ○○일 ○○ 8급 ○○○에게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를 사유로 견책을 처분한 바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81호, ‘19. 1. 8)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19.4.17)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80호, ‘19. 1. 8)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6조는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수당규정’에 따르면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2017년 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전년도인 2016. 7. 1.부터 2016. 12. 31. 기간 동안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16.○○.○○. 견책처분을 받은 ○○8급 ○○○에게 정근수당 35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징계자 및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9명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특수업무수당, 정근수당 5,684,47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29건/ 5,684,470원 회수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부당 지급된 수당 5,684,470원 회수 완료(2019.1016.)	재무과	행정8급, 이정아 (740-3263)

처분요구서(25)

【제 목】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업무태만 등

【현 황】

○ 휴업처리 현황

석유판매업자			휴업신고				휴업사유	비 고
상호	대표자	등록일	1회	2회	3회	4회		
000주유소	000	'13.2.19	'14.2.18 (~'15.2.17)	'16.12.28 (~'17.6.30)	'18.1.5 (~'19.1.4)	'19.1.5 (~'20.1.4)	국도공사	
000주유소	000	'16.12.19	'18.1.5	'19.1.23	-	-	국도공사	

※ 위 주유소 내 바닥에 땅굴을 파서 송유관 도유시설 설치 사건('18. 6월)으로 대표자(000)가 징역형(2년6월) 판결('18.11.15)을 받음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현황

석유판매업자		위반 조항	위반행위	행정처분		처분일 (위반일)	비고
상호	대표자			처분 기준	실제 처분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5.7.8 ('15.5.12)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5.8.18 ('15.7.8)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6.9.6 ('16.7.11)	
000주유소	000	제39조	유통질서 위반	사업정지 1월	과징금 750만원	'17.7.10 ('17.3.16)	감경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7.12.1 ('17.11.1)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8.10.23 ('18.6.7)	
000주유소	000	제27조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경고	경고	'18.9.5 ('18.8.16)	
000주유소	000	제39조	정량미달판매	경고	경고	'19.4.16 ('19.1.29)	
000주유소	000	제39조	유통질서 위반	사업정지 1월	과징금 888만원	'19.5.9 ('19.3.27)	감경

【지적내용】

1. 석유사업자 휴업처리 부적정

- 영동군 000에서는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과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항 및 13조(등록의 취소 등)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할 때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3조제5항[별표1]에 의거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30일 이내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제3항[별표6]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2103, 2015.11.3)에서도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제품 구매보장을 통한 권익보호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년간 휴업 후 계속하여 재 휴업을 할 수는 없으며, 휴업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행정청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상기 2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한 휴업현황과 같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고 000주유소의 경우에는 6년간 휴업신고를 4차례 수리하고, 000주유소의 경우에는 2년간 휴업신고를 2회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휴업신고 사유는 신도로 개통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영업불가하여 휴업하였다고 신고했으나 도로공사는 2017.2월 준공되어 이후에는 주유소 영업에 문제가 없어 2017년 이후에 휴업신고를 받아들일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휴업 신고를 수리하였고, 2018. 1월 휴업신고 수리 당시 공문에 “향후 석유판매업 휴업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실도 또한 있다.

○ 더욱이, 상기 주유소는 휴업기간 중 송유관공사 점유의 기름을 절취하기 위하여 000주유소의 경우 3m정도의 땅굴을 파다 현장 여건상 중단하고, 000주유소의 경우 55m의 땅굴을 파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밸브와 호수를 설치하여 2018. 6월 대둔군산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 영동군과의 합동점검에서 위법행위가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형을 판결(대전지방법원 대표자 000 2년 6월)을 받아 사실상 주유소 운영이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2019. 1. 22일 내부수리에 따른 휴업으로 또 다시 휴업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휴업신고 만료 후 사업개시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개시를 6개월 동안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휴업신고를 재차 받아들여 해당 주유소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유통질서 저해와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7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였거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1]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확인결과, 영동군 000에서는 000주유소의 경우 유통질서 위반(이동판매 차량으로 화물차량에 유류 직접 주유)으로 2017.3.16.일 적발되어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앞서 법률의 부지와 그동안의 위반행위가 없는 등을 감안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하여 1/2 감경처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9.3.27.일 유통질서 위반(공급사와 거래한 유류를 타주유소에 공급)으로 재차 적발되었음에도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업주의 요청만으로

1/2 감경처분과 더불어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 하였는바, 위반행위의 정도가 감경해 줄만한지, 위반동기는 무엇인지, 위반행위 결과는 어떠한지 등 감경처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처분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

○ 행정상 처분 : 주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 수리 시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별칙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4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석유판매업 관련 신고사항 수리 시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음. • 향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경제과	공업8급, 김대중 (740-3715)

처분요구서(26)

【제 목】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업무 소홀

【현 황】

○ 기계식 주차장 관리 현황

건물명	기준대수 및 방식	사용·정기검사		철거일	행정처분
		최종 정기 검사일	검사유효일		
000	4대(유압)	2017.8.18	부적합	2019.3.15. (19개월 지연)	과태료 미부과
000	2대(수동)	2016.3.23	2018.3.22	2019.3.5. (11개월 지연)	과태료 미부과
	15대(로프)	2016.3.23	2018.3.22	2019.3.5. (11개월 지연)	과태료 미부과

【지적내용】

- 영동군 000과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인증, 설치허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⁴⁾와 정기검사⁵⁾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제2항에 따라 제19조의9 제2항 각호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0조(과태료) 및 별표6에 따라 법 제19조의9에

다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각각의 경우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한다.

-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및 전문검사 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부적합 통보를 받고 유효기간내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고 부착하도록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검토해야 한다.
- 그러나, 영동군 000과에서는 000(관리자:000) 기계식 주차장이 2017. 8. 18일 정기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9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철거를 확인하였고, 000(관리자:000)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유효기간이 2018. 3. 22일 임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개월이 경과한 2019. 3. 5일 철거완료를 확인하였으며, 부적합 통보 및 유효기관 경과 이후 현장 지도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장 사용 금지 표지판 부착여부 및 철거 전까지 운행여부 조차 알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지 않는 등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기계식주차장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기검사 및 사용 검사 등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4)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3년)

5)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2년)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설교통과	행정6급, 송재홍 (740-3074)

처분요구서(27)

【제 목】 화물운수사업법 등 위반 행정처분 업무소홀

【현 황】

○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처분현황(2016~2019.5월)

연도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 고(행정처분 사항)
		적발	처분	미처분	
합 계		43건	5건	38건	
2016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14건	2건	12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2017	〃	13건	-	13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2018	〃	12건	3건	9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2019	〃	4건	-	4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현황(2016~2019.5월)

연도별	의심거래	조사여부		의심거래 금액(원)	제재조치		처분지연일
		실시	진행중		미처분 (처분대상 아님)	행정처분	
합 계	29	23	6	523,890	9	14	
2015	6	6	-	-	3	3	228~414일
2016	17	17	-	-	6	11	20~177일
2017	2	-	2	209,580	-	-	652~755일
2018	4	-	4	314,310	-	-	136~472일
2019	-	-	-	-	-	-	-

【지적내용】

1.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행정처분 소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3]에 전세버

스에 대한 밤샘주차의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 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별표2]와 제30조[별표3]에 따라 차고지등 외에 밤샘주차⁶⁾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영동군 000과에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결과, 2016~2019년 5월 현재까지 43건을 적발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적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나 5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38건에 대해서는 계도처분만 했을 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반행위 단속대장조차 관리하지 않아 2~3회 적발된 차량도 10여 건에 달하는 등 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처분 소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등을 행위금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1항 및 제29조제1항 의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거나 감차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 규정 제33조에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영동군 000과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2015~2019년 현재까지 29건의 의심거래 내역 중 29건 모두 20일~최대 472일까지 지연 처리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한 날 또는 적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조사가 1개월 내에 착수하여 3개월 내에 행정처분이 이뤄 질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 의심거래 금액 523,890원을 확인 후 회수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회수(6건 / 523,890원)

- 신분상 처분 : 3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건설교통과	행정7급, 최성준 (740-3512)

처분요구서(28)

【제 목】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현 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미부과 현황

종 류	미부과 대상건수	유효기간	미부과 과태료금액 (천원)	비고
굴삭기 등 6종	70	2008. 7. 31. ~ 2019. 4. 19.	32,850	

【지적내용】

- 영동군 000과에서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계 등록·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은 법 제44조 제3항제6호 및 시행령 제19조[별표3]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법 제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영동군에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을 말소 하

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계 70대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2008. 7~ 2018. 9월 도래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채 2018. 10월 최고통지만 하였을 뿐, 과태료 부과 및 직권 말소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명 세 표】

종 류	미부과 대상건수	유효기간	미부과 과태료금액 (천원)	비고
총 계	70	2008. 7. 31. ~ 2019. 4. 19.	32,850	
굴삭기 등 6종	3	2008. 7. 31. ~ 12. 31.	1,500	
	16	2009. 1. 1. ~ 12. 31.	8,000	
	6	2010. 1. 1. ~ 12. 31.	3,000	
	2	2011. 1. 1. ~ 12. 31.	1,000	
	7	2012. 1. 1. ~ 12. 31.	3,500	
	7	2013. 1. 1. ~ 12. 31.	3,500	
	2	2014. 1. 1. ~ 12. 31.	1,000	
	3	2015. 1. 1. ~ 12. 31.	1,500	
	3	2016. 1. 1. ~ 12. 31.	1,500	
	0	2017. 1. 1. ~ 12. 31.	0	
	6	2018. 1. 1. ~ 9. 21.	3,000	
	15	2019. 1. 1. ~ 4. 19.	5,350	

【관련자 조서】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건설기계 7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최고통지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부과(70건/ 32,850천원)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최고장 발송 : 2019. 11. 5. • 과태료사전통지서 발송 : 2019. 11. 23.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2019. 12. 11. • 완료 후 직권말소 등록예정	건설교통과	공업7급, 정태영 (740-3503)

처분요구서(29)

【제 목】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리·집행 업무 부적정

【현 황】

○ ◆◆◆◆ 시설 현황

설립 형태	주소	설립일	종사 자수	아동 정원	성 명	직 위	근 무 기 간	비고
법인 (○○ ○○○ 유지재단)	영동군 ◇◇◇ ◇◇◇	'05.12.20	2명	29명	○○○	시 설 장	'17.10.1.~ 현재	
						생활복지사	'14.7.21.~'17.9.30	
					○○○	대 표 자	'13.12.01.~현재	

○ 보조금 계좌 부당 입·출금 거래 현황('17~'18)

(단위 : 천원)

회계년도	계좌구분	출 금		입 금		비고
		회차	금액	회차	금액	
	계	221	127,824	311	127,824	
2017	급식비	22	21,400	50	21,400	
	운영비	12	14,300	25	14,300	
2018	급식비	35	25,850	56	25,850	
	운영비	152	66,274	180	66,274	

【지적사항】

- 영동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등 보조금을(국 50%, 도 15%, 군 35%)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에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므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른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방식은 보조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전용 체크카드 또는 인건비 등은 계좌이체로 지출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계정원장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조금 계좌의 거래내역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의 2017~2018년도 운영비 및 급식비 보조금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결과, 총계정원장(수입·지출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에만 존재하는 부당 입·출금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 출금 총 221회, 입금 총 311회 / 127,824천원 출금 후 입금

- 해당 부당 입·출금 건은 ◆◆◆◆◆◆ 시설장⁷⁾ ○○○이 개인(가정)의 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비 및 급식비 보조금 계좌에서 현금 또는 cd기 이체 방식으로 시설 대표자인 ○○○(남편) 및 본인 계좌로 출금 및 이체하여 유용한 후, 출금한 보조금액에 대하여 총 출금액수를 맞추어 수회에 걸쳐 해당 계좌로 분할하여 인터넷 또는 cd기 이체방식으로 입금 처리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당 입·출금 내역을 은폐하고자 보조금 통장의 거래내역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에서 보조금 관리·운영을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보조금 정산검사 및 시설 운영 점검 시 해당 시설이 아동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및 급식 운영 등이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어 왔고, 총계정원장과 수입·지출서류 대조 시 보조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집행된 점 등 시설 운영과 사업비 집행이 원활히 추진된 점으로 미루어 보조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총계정원장에 나타나지 않은 보조금 계좌의 부당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17~ '18년 기간 동안 시설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영동군 ○○○○과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검사 시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과 총계정원장의 기록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당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고발, 주의

- 아동복지시설에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현금 입·출금, 인터넷뱅킹 및 CD기 입·출금 등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고, **보조금 집행 거래내역 정산검사 시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조금 계좌거래 원장을 확인하는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방 시설장 ○○○은 2017~2018년도 영동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급식비 용도로 교부한 보조금을 용도 외에 개인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보조금 계좌에서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총127,824천원을 출금한 뒤 입금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
-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에 따라 개선명령(1차 행정처분의 경우)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3명

7) ○○○ - '14.7.21.~'17.9.30. : 생활복지사, '17.10.1 ~ 현재 : 시설장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가족행복과	사회복지8급, 이영우 (740-3763)

처분요구서(30)

【제 목】 마을기업 보조사업 지도·감독업무 태만

【현 황】

○ (현황1)보조금 계획·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사업계획('17.7.14 변경승인)		집행현황		비고
	계	60,000	계	54,068	
인건비	인건비	800		800	
재료비	공구매	2,500		2,500	
	배추구매	3,920		3,920	
시설비	체험가공장 신축	21,500		15,950	
	체험가공장수도시설	6,000		1,100	
	체험가공장보일러시설	2,500		2,750	
	-		울타리공사	2,095	신규 추가
	체험가공장 전기시설	1,050		1,050	
	설계비	4,000		4,400	
	사무기기(컴퓨터,복합기)	1,400		1,540	
물품구입	병아리부화기	330		-	미집행
	스팀가마솥	12,500		13,750	
	메주성형기	2,800		-	미집행
	다용도작업대	700		363	
	-	-	배추절단기	3,850	신규 추가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현황1) 체험·가공장 건축 현황

건물명	권리자	위 치	구조/면적	건물준공	소유권 보존 등기일	보조금 취득재산 부기등기	비고
신축	◇◇◇◇	영동 ◇◇면 ◇◇리 ◇◇◇-1 제1동	경량철골구조 70㎡	'17.10.31	'18.2.1	미이행	
증축	조합법인	영동 ◇◇면 ◇◇리 ◇◇◇-1 일원	경량철골구조 28.8㎡	'18.12.20	-	-	

【지적사항】

○ 영동군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의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기업을 지정(행정안전부)하여, 영동군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고 1차년도에 50백만원, 2차년도에 3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국 50%, 도10%, 군 40%)

- 2017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조합법인(대표 ○○○)은 ‘△△△ □□ ○○, △△△ □□ ○○○○○’ 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으로 농산물채험가공장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 보조사업비 집행 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등 지도감독업무 태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에 따르면 사업 실행계획서 상 미기제한 물품 등의 취득은 불가하며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비목 간 금액조정이나 항목 신설 등 예산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연도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위(현황1)와 같이 사업계획에 있던 배추성형기와 병아리부화기를 구입하지 않고 계획에 없던 배추절단기(비목내 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물품)를 구입하고, 사업계획에 없던 울타리공사는 신규공사 임에도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여 시설비목에서 추가공사 검토 및 승인 없이 추진하였으며, 계약서류 등에도 착공일 및 준공기한도 없이 2017. 12월 착공하여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인 2018. 1월(부가세는 2018.3월)에 공사비를 집행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그런데도 영동군에서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검사하면서 변경 승인 없이 추진한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2.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등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조합법인에서는 2017년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체험 가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2018. 2. 1.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 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 이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교환, 대여 등의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명기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에서는 신축건물 등기 시 위 보조금에 대한 명시사항을 부기등기 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증축한 건물(포장·자재실)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19.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바닥공사 등의 사유로 건물등기를 미이행하였다.
- 그런데도 영동군에서는 건물 준공 후 보조금 정산검사 시 해당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적법하게 조치하였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분기별 1회, 자립형 마을기업 중 자립 1~2년차는 반기별 1회, 3년차 이상은 연 1회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동군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등 마을기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 시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시기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업무판단 미숙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경제과	행정6급, 박성술 (740-3732)

처분요구서(31)

【제 목】 국악소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 구매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업명 : 국악소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 구매

○ 사업기간 : 2016. 10. 20.~11. 19.

○ 계약금액 : 93,500천원(국비 80%, 군비 20%)

○ 사업내용 : HW(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및 SW(백업, 서버보안) 구매

【지적내용】

○ 영동군 ○○○○○에서는 국악음원자료의 보존과 국악통합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국악소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 구매계약(계약금액 93,500천원, 계약기간 '16. 10. 20.~11. 19.)을 (주)○○○과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기준과 방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등이 사업범위에서 일부만 포함되어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받아 과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고,

○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특수한 성능 등이 없으면 사업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구축된 시

스택과 연계·호환이 중요하여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어 물품공급·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물품 규격서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하거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조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에서는 국악소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기 운영중인 백업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 ○○○○○○○○)의 백업SW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 납품 물품 중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해 유사한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비교하고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후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비교·검토 없이 아래 표와 같이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였다.

[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 현황

특수한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물품	협약서 상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	실제 낙찰자가 물품을 제공받은 업체
서버	㈜○○○○○	○○○○○○○○○○○
스토리지	○○○○○○○○○○○○○(주)	○○○○○○○○○○○○○(주)

- 그 결과 입찰참가자에게 적절한 입찰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였고,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하고 특정 규격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 영동군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위한 물품 구매 시 품질·성능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규격을 결정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구 ○○○○○)
- 행정상 처분 : 주의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 도입 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필요성 검토 및 기술지원 협약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 도입 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코자 할 때는 필요성 검토 및 기술지원 협약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국악문화체육과	행정8급, 정지선 (740-3223)

처분요구서(32)

【제 목】영동군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 업 명 : 영동군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12.~2019. 1. 13.
- 계약금액 : 160,000천원(국비 40%, 군비 60%)
- 사업내용 : 영동군 보건진료소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적내용】

- 영동군 ○○과는 보건지소별 각종 전기기기의 실시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원격 On/Off로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계약금액 160,000천원, 계약기간 '18. 10. 12.~'19. 1. 13.)을 (주)○○○과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참여인력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용역의 착수와 보고)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과업계획 및 수행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 또한 사업 계약서에 포함되는 과업지시서 제출서류에 따르면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 사본 6부를 계약 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착수 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영동군 ○○과는 착수신고서의 인력투입을 확인하여 제출된 자격증 소지자의 사업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인력인 경우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아래 표처럼 자격증 소지자인 ○○○, ○○○ 대신 ○○○이 사업에 투입되었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표] 인력 현황

계약시 자격증 제출	투입 인력
○○○, ○○○, ○○○	○○○, ○○○

<사업 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영동군 ○○과는 계약이행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에 맞게 용역 성과물이 완성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한 후 용역 성과물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하도록 그에 관한 의견을 검사(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했어야 했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주)○○○이 제출한 완료계를 기초로 준공 검사하였는데, 계약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검사하여야 함에도 과업 중 일부 기능(기상청데이터 연동 기능)이 미흡함을 발견하지 못

하고 준공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 영동군 ○○과는 종합감사기간 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미흡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보완조치 예정이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계약서에 따라 기상청데이터 연동 기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시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 관리 및 준공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상 기상데이터 연동 기능을 보완 조치예정('19.10.25.)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경제과	공업8급, 김대중 (740-3715)

처분요구서(33)

【제 목】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현 황】

【표1】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2016~2018)

구분	실태조사 계보일	통보부서	실태조사결과		비고
			제출부서	미제출부서	
계		87개 부서	80개 부서	7개 부서	
2016	2016.5.16.	○○○○과 등 29개	실·과 18개 ☆☆읍 등 4개	□□면 등 7개	읍면 공문 제출 그 외 시스템
2017	2017.5.11.	○○○○과 등 29개	실·과 18개 ☆☆읍 등 11개	없음	읍면 공문 제출 그 외 시스템
2018	2018.4.23.	○○○○과 등 29개	실·과 18개 ☆☆읍 등 11개	없음	읍면 공문 제출 그 외 시스템

【표2】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현황

구분	재산	소재지	공부지목	지적면적 (㎡)	점유면적 (㎡)	이용 실태	무점 기	단 유 간	변상금 (원)	비고
계		8 필지		3,952	2,689				1,076,270	
도유	토지	영동군 영동읍 △△리 548-30	구거	1,393	130	포도	2014.6.14. ~ 2019.6.13.		40,380	
군유	토지	영동군 용화면 △△리 40번지	전	417	417	포도	2014.6.14. ~ 2019.6.13.		70,770	
군유	토지	영동군 학산면 △△ 1040-11번지	전	1,061	1,061	사과	2014.6.14. ~ 2019.6.13.		305,720	
군유	토지	영동군 양산면 △△리 314-7번지	전	217	217	복숭아, 백당 나무	2014.6.14. ~ 2019.6.13.		133,980	'18년실태 조사 적발
군유	토지	영동군 양산면 △△리 314-8번지	전	498	498	백당 나무	2014.6.14. ~ 2019.6.13.		307,460	“
군유	토지	영동군 양산면 △△리 314-19번지	전	18	18	복숭아	2014.6.14. ~ 2019.6.13.		11,120	“
군유	토지	영동군 양산면 △△리 314-20번지	전	107	107	백당 나무	2014.6.14. ~ 2019.6.13.		66,060	“
군유	토지	영동군 양산면 △△리 316-1번지	임야	241	241	자두	2014.6.14. ~ 2019.6.13.		140,780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영동군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재산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영동군 ○○과는 매년 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에게 실태조사를 독려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제출을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 통보하면서 위 [표1과] 같이 2016~2018년까지 총 87개 부서(누계치)중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서가 7개 부서에 달하는데도 실태조사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위 표2와 같이 △△면에서 2018년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로 보고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무단점유 공유재산 관리 소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위 <표2>와 같이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8필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임에도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이번 감사에 밝혀진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8건 1,07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및 원상복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조치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8건 / 1,076천원(추정)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19. 06. 28.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 2019. 07. 15.까지 • 변상금 부과 : 2019. 07. 16. •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민원과	행정7급, 박지수 (740-3132)

처분요구서(34)

【제 목】관리위탁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소홀

【현 황】

○ 영동군 공유재산 공제회비 미부과 현황

소관 부서	시설명	허가 (대부)단체	대표자	허가기간	면적 (㎡)	유상 / 무상	부과누락금액(원)	
							17년	18년
총계	556,990원						249,380	307,610
○○사업소	☆☆☆장 사무실	영동군 ☆☆☆협회	***	2016.11.16. ~ 2019.12.31.	238	무상	116,730	143,990
"	영동군민 □□□ 관리사무실	영동군 □□□협회	***	2018.1.1.~ 2020.12.31.	442	무상	132,650	163,620

【지적내용】

- 영동군에서는 ○○○○○ 등 18개의 행정재산에 대해 16개의 기관·단체에게 유·무상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위탁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영동군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도 유·무상 관계없이 영동군이 부담한 공제회비를 관리수탁자에게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장 사무실 등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영동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부담한 공제회비를 관리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함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건, 556천원의 공제회비 부과를 누락하였으며,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민원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과 및 부과현황을 제출하게 하면서 허가·대부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정한 공제회비를 각 재산관리관 별로 부과하게 하였으면서도, 공제회비 부과·징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음에도 부과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제회부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 사무실 등 2건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영동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부담한 공제회비 556천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행정재산관리부서와 공제회비 부과에 대한 연찬을 통해 공제회비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4건, 556천원(부과)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관리위탁 공제회비 납부 안내 : 2019. 10. 18. • 관리위탁 공제회비 부과 : 2019. 10. 18. • 행정재산관리부서와 공제회비 부과에 대한 연찬을 통해 공제회비 부과·징수 업무 철저	민원과	행정7급, 박지수 (740-3132)

처분요구서(35)

【제 목】 관리위탁 행정재산 전대 관리·감독 소홀

【현 황】

- △△(□□□□) △△△△장 관리위탁 현황

소관 부서	시설명	위탁기관	대표자	허가기간	면적 (㎡)	유상/ 무상	수탁자 선정방법
○○○○○ 센터	△△(□□□□) △△△△장	영동☆☆ ☆☆☆	***	2016.7.1.~ 2019.6.30	197.06	유상	수의계약

【지적사항】

- 영동군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 △△△△장 시설을 2016. 7. 1.부터 2019.6.30.까지 영동☆☆☆☆☆에 관리위탁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8호, 2018.12.7.)」 제10조 제2항 및 같은 기준 별표4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 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영동군 ○○○○○○ □□□□□에서는 △△(□□□□) △△△△장 수탁기 관인 영동☆☆☆☆☆가 제3자에게 전대 할 경우 전대계획을 제출 받아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 그런데, ○○○○○○ □□□□□에서는 수탁대상자는 영동☆☆☆☆☆로하고, 판매장 운영은 영동▽▽▽▽▽가 한다고 민간위탁을 위한 협의 결과를 보고 <□□□□□-3**8(2016.5.9.)호>를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영동☆☆☆☆☆는 주류 판매면허가 없어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동▽▽▽▽▽에 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영동☆☆☆☆☆와 △△(□□□□) △△△△장 위탁·수탁 협약(2016.5.25.)을 체결하면서 영동☆☆☆☆☆로부터 전대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제출요구를 하지 않아 2016.7.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영동☆☆☆☆☆회가 영동군의 승인 없이 영동▽▽▽▽▽에 전대하게하여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배되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체결하여 행정재산이 승인 없이 전대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재산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배되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체결하여 행정재산이 승인 없이 전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정경순 (740-5541)

처분요구서(36)

【제 목】○○○○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기부채납 절차 등 부적정

【현 황】

○ [표1]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영동군 ☆☆면 △△리 606 (△△2리)	2019.1. ~ 2019. 12.(1년)	500백만원	인조잔디 포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350㎡

○ [표2]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관련 기부채납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기부채납면 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영동군 ☆☆면 △△리 606	창고	2,879	1,375	영동군 ☆☆면 △△리 553	△△리 마을회	2019.2.1. 기부채납 내부결재

○ 추진경위

- '18. 8. 2. : 군수지시에 따른 ☆☆면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검토 보고(○○○○○○○)
⇒ △△리 마을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되어야하나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 검토 가능
- '18. 9. 11. : 영동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 배포(기획감사담당관)
⇒ 전부서에 예산 편성전 사전이행절차(공유재산심의회 등) 완료 후 그 사본을 제출할 것을 통보
- '18. 9. 18. :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계획 건의(☆☆면⇒○○○○○○○)
⇒ 마을이장의 면사무소 방문 후 구두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 '18. 10. 16. : 2019년 본예산(자체예산)편성에 따른 시설사업소 소요예산 검토보고
※ 2019년 ○○○○○○ 전체 소요예산에△△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설명서 포함
- '19. 1. 14. :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용역 집행(○○○○○○○)
- '19. 2. 1. : 마을회부지 기부채납(☆☆면 △△리 606번지) 내부결재(○○○○○○○)
※ 해당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접수되어라고 공문상 명시하였으나 소유자로부터 기부서는 받지 아니함
- '19. 2. 28. : ☆☆면 △△리 606번지 등기이전 완료

【지적내용】

- 영동군 ○○○○○○에서는 ☆☆면 △△리 606번지의 1,375㎡의 '19. 2월에 △△리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2019년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1.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아래 표<별표11> 세출예산 성질 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포함)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 에 필요한 경비
	402 민간자 본이전	01. 민간 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 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훈령 제57호, 2018.10.01.)>

- 또한, 영동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기획감사담당관-4221(2018.9.11.)호>에 따르면 사전이행제도의 확행을 위해, 1,000㎡이상의 토지 취득은 공유재산심의회 상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요구 시 사전이행절차 이행완료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영동군 ○○○○○○에서는 ☆☆면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검토('18.8.2.)를 하면서 △△리의 게이트볼장은 △△리마을회 재산으로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검토 되어야 하나 사업 추진할 부서가 불분명하고, ○○○○○○ 시설비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사업부지를 영동군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사업추진 검토가능하다고 군수에게 업무보고하였다.
- 그리고, ○○○○○○는 ☆☆면사무소로부터 사업대상 부지는 영동군에 기부채납 을 명시한 '△△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계획'<☆☆면-12**4(2018.9.18.)호>을 제출받아, 2019년도 본예산(자체예산)으로 '○○○○(△△리)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위해 시설사업소 소요예산 검토보고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면사무소에서는 △△리 마을 공동 소유인 ☆☆☆면 △△리 606번지에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마을공동소유 재산임에도, △△리 마을이장으로부터 구두상(☆☆면 부면장의 사업계획 제출 경위서)으로만 받아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에 제출하였으며,
- ○○○○○○는 ☆☆☆면에서 건의된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지가 기부 채납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2019년 영동군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 사전이행제도 즉, 1,000㎡이상 취득(기부채납)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는 사전이행절차 이행완료 증빙서류를 첨부 하지 않고,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기부채납 가능 여부 등 충분한 검토 없이, 2019년 본예산(자체예산)편성에 따른 시설사업소 소요예산 검토 보고(2018.10.16.)의 사업설명서에 기부채납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검토과정에서 기부채납이 누락된 사업설명서만 확인하여 사전이행절차 이행완료 증빙이 없음에도 2019년 본예산에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다.
- 더구나, 예산요구 당시까지 마을 공동소유였던 ☆☆☆면 △△리 606번지 토지에 대해 ○○○○(△△리)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편성목 중 자본적 지출은 소유권에 따라 구분되어 군소유 재산인 경우 시설비 계상이 가능하지만, 민간소유인 사업 대상지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되어야함에도, ☆☆☆면에서 제출한 △△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대화 사업계획만으로, 공동소유자인 마을주민들의 기부채납 약약서 등 서류나 문서 없이, 500백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2월 기부채납 결정 결재 전에 2019년 1월에 기부채납 되지 않은 사업대상지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다.

2. ○○○○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 기부채납 절차 이행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기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

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등을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세워 그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등의 취득과 매각, 교환 등 처분으로 토지의 취득이 군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영동군 ○○○○○○에서는 위의 <표2>와 같이 △△리 마을회 소유인 ☆☆☆면 △△리 606번지에 대한 기부서 접수 후 기부채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부채납 대상 면적이 1,000㎡이상 토지에 해당됨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의결한 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 후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여야했다.
- 그런데, 영동군 ○○○○○○에서는 △△리 마을회로부터 기부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부채납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임에도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의결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을회부지 기부채납

을<○○○○○○-6*5(2019.2.1.)호> 기부채납에 대한 적정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내부결재 후 결정하여 등기이전이 완료(등기이전일 : 2019. 2. 28.)되는 등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이행 없이 기부채납 업무 추진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

○ 행정상 처분 : 주의

- △△리 마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게이트볼장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및 기부채납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여, 마을 주민들의 편의증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기부채납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바, 앞으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관련된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 업무연찬을 통해 공유재산에 관련된 업무 절차를 숙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공유재산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시설사업소	시설8급, 최종택 (740-5995)

처분요구서(37)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정산소홀

【지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⁸⁾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면,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3.43%~1.2%(2019년 기준)까지 적용함.

○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 및 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통해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을 한 물품 등의 거래명세표와 증빙사진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영동군에서는 2015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홈택스 제3자 조회 불가),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진, 거래명세표 등)가 부재한 실정이며, 타 건설공사 현장과 중복하여 동일 정산하였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증빙서류인 사진을 중복 사용하여 정산하는 등 총 9건의 공사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업체간 거래명세서를 통한 정산, 안전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34,650천원 상당액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라바콘, PE드럼, 왕카호스, 라바콘 연결재, 안전헬스, 쏘라 등, 방한복 등'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6,489천 원 상당액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5건의 약 41,139천원 상당액을 감액, 회수 등의 조치없이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41,139천원을 확인 후 법령에 근거하여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시기 바람,

-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3자 발급조회, 월별목록조회 등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감액 2건 514천원 / 회수 13건 40,625천원

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07.01. 이후)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미납 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조치 • 대상기업에 대하여 환수 통지서(고지서) 발송 ('19.10.29예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에 따른 금액(13,059천원)을 회수 조치 예정('19.11.30.일까지)	농정과	농업6급, 박창용 (740-3452)
• 부당 청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94천원 회수 통보 및 세외수입고지서 발부 완료('19.10.04.)	산림과	행정6급, 김호욱 (740-3342)
• 미 정산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11월중에 설계 변경하여 감액 예정	환경과	시설8급, 이의현 (740-3434)
• ○○○도로확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집행실적(세부내역)부재, 타 현장 중복건 7285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예정('19.12.31.) • ○○○교 내진보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목적 외 사용 3건 1149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예정('19.12.31.) • ○○○도로확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부가세 포함건 398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예정('19.12.31.) • ○○○지구 세천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목적 외 사용 1건 및 부가세포함 건 509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예정('19.12.31.)	건설교통과	시설7급, 남승훈 (740-3543) 시설8급, 배준열 (740-3533) 시설8급, 왕현호 (740-3544)
•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2,363천원) 회수 조치 안내('19.10.1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정산 내역(5,105천원) 회수 조치 안내('19.10.15.)	안전관리과	시설7급, 양성필 (740-3922) 시설8급, 전병도 (740-3934)
• ○○○○○센터 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회수 조치 예정('19.10.29.)	보건소	보건7급, 나상흠 (740-5583)
• ○○○○○면 관리(후리)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512천원) 회수 완료(10.22.) • 향후 사업 시행 시 관리감독 철저토록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시설8급, 김현건 (740-5647)
•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금 부과 사전통지 : 2019. 10. 2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금(1,230천원)회수 예정	시설사업소	시설8급, 최종택 (740-5995)

처분요구서(38)

【제 목】건설공사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

【현 황】

○ 정기적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도금액 1억원 이상) (단위 : 건)

합 계	○○과	○○○사업소	비 고
11	1	10	

○ 최종검사 미 실시 현황(분청, 도금액 1억원 이상) (단위 : 건)

합 계	2015.4.~	2016	2017	2018	2019	비 고
176	37	43	42	47	7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1. 정기적 하자검사 미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복원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6.12.14. ~ 2019.12.14.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상반기를 제외한 2017년~2018년까지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소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5.12.09.~2018.12.08.까지임에도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를 제외한 2016년~2018년까지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2. 최종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아울러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하자담보 기간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인 ○○과에서는 2015.4월~현재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176건의 사업에 대하여 미실시한 경우 관련부서에 최종검사에 대한 촉구를 하는 등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과, ○○○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기간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준공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의 및 촉구를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재무과	행정7급, 최태정 (740-3272)
• 하자검사 실시 : 2019. 07. 25. • 하자검사에 따른 보완조치 : 2019. 10. 23. • 향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해 보완토록 하겠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산림과	녹지8급, 이미정 (740-3322)
• 종합감사결과처분에 따른 하자검사 실시완료(19. 10. 24.) - 검사자 : 수도시설팀장 외 2명 - 건 수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0건	상수도사업소	행정7급, 김동영 (740-5632)

처분요구서(39)

【제 목】 노후관 개량 예산확보방안 강구(권고)

【현 황】

□ ○○○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6. 11. ~ 2019. 06.
- 용역비/용역사 : 636백만원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 과업목적
 - 수도법(제4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도모
- 과업범위
 - 공간적 / 시간적 범위 : 영동군 전역(A=845.4km²) / 2035년(5개년 4단계)

□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5년간)
- 총사업비 : 28,636백만원(국비 14,318, 도비 3,580, 군비 10,738)
- 사업목표 : 사업대상구역 유수율 85% 이상 달성
- 사업구역 : ○○(배), ○○(배), ○○(배), ○○(배), ○○○(배), 급수구역
 - ※ 사업대상구역 미정, 유수율 현황분석 등 환경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사업범위
 - 영동군 전체 :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구역 : 관망정비 63km, 누수탐사 및 복구 108km

< 영동군 지방상수도 현황 > (2017 상수도통계)

- 취·정수시설 : ○○, ○○ 및 ○○ 취·정수장 운영
 - ※ 시설용량 : ○○(정) 22.5천m³/일, ○○(정) 4.5천m³/일, ○○(정) 1.35m³/일
- 급·배수시설 : 배수지 8개, 배수관로 371.3km, 가압장 24개, 급수전 15,079전
- 보급현황 : 급수보급률 78.3%(급수인구 39,766명/총인구 50,798명)
- 공급현황 : 공급량 16,818m³/일, 유수수량 10,037m³/일, 유수율 59.7%

【지적내용】

- 영동군에서는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2.01.01.)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17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8년 현대화사업 대상지자체로 영동군이 선정되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영동군은 2018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크게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유지관리로 나뉘지며, 이로 인해 영동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블록시스템 구축 내용을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영동군을 3개 대블록, 8개 중블록, 18개 소블록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후관로의 개량이 필연적인데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영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확인한 결과 관로, 불량관 등 노후관 개량계획이 약 63km, 127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18개 소블록 중 관로 설치에 국비가 지원된 5개 소블록이 환경부와 협의결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유수율을 59.7%¹⁰⁾에서 74.8%까지 높일 수 있으나, 영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수율 목표인 8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 약 75km, 14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5개 소블록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연간 559천m³ 정도의 누수발생으로 연간 1,321백만원, 5년간 6,605백만원의 누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용역결과에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영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5개 소블록 12km에 대하여 노후관 개량 사업예산 22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실정에 있다.

【처분요구】

¹⁰⁾ 전국평균 유수율 85.2%, 충북평균 85%, 영동군 59.7% (2017년 상수도 통계자료)

○ 기관·부서명 : 영동군 ○○○사업소

○ 행정상 처분 : 권고

-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관 개량계획이 유수율 85%를 달성하고 이에 따라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상수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동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5개 소블록에 대한 노후관 개량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유수율 85% 달성을 위하여 노후관 12km에 대해 사업예산 22억원을 추가 확보 할 예정	상수도 사업소	시설6급, 이웅 (740-5641)

처분요구서(40)

【제 목】○○○○센터 건축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소홀

【현 황】

- 위 치 : 영동군 ○○면 ○○리 ○○○번지
- 공사규모 :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 신축(지상 2층 / 연면적 459.36㎡)
- 공사비 : 774,746천원 (도급액 550,834 / 관급액 223,912)
- 계약일 : 2018. 11. 9.
- 공사기간 : 2018. 11. 15. ~ 2019. 10. 13. ※ 현공정 65%(골조공사 완료)
- 도급자 : ○○토건(주) 대표 ○○○
- 하도급공사
 - 하도급액 : 199,496천원
 - 계약일 : 2019. 3. 26.
 - 공사기간 : 2019. 3. 26. ~ 2019. 10. 11.
 - 하도급자 : ○○건설(주) 대표 ○○○ (등록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계약내용 :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부대공사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토건(주) 대표 ○○○과 2018. 11. 9.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8. 11. 15. 착공하여 2019. 10. 13.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서 건설업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종별로 구분¹¹⁾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서 종합공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5개의 종합공사 시공업종과 29개의 전문공사 시공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에 등록

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변경·해제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자체인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 도급업체인 ○○토건(주)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¹²⁾ 등록업체인 ○○건설(주)와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2019. 3. 26. 체결(계약액 199,496천원)하여 영동군 ○○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건설(주)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해당 공종의 공사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였다.
-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계약을 통보 받았을 때 건설공사의 내용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하도급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업체가 등록한 건설업의 업무범위와 관계가 없는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하도급업체 적격심사에 관련 법령에 맞추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경제과	시설6급, 장진욱 (740-3722)

12)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처분요구서(41)

【제 목】○○ ○○○○ 조성 건축공사 설계 검토 소홀

【현 황】

- 위 치 : 영동군 ○○읍 ○○리 ○○-○번지
- 대지면적 : 2,527㎡
- 공사규모 : ○○ 1동 신축(지상 2층 / 연면적 2,527㎡)
- 공 사 비 : 1,064,106천원(도급액 794,671천원 / 관급액 269,435천원)
- 계 약 일 : 2018. 12. 18.
- 공사기간 : 2018. 12. 19. ~ 2019. 8. 13. ※ 현공정 40%(외부마감 공사중)
- 도 급 자 : (주)○○건설 대표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 유실수 단지를 활용한 체험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 ○○○○ 조성’ 건축공사를 (주)○○ 건설과 2018. 12. 18.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8. 12. 19. 착공하여 2019. 8. 13.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동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파일항타 내역을 중복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의 제경비 계상 및 신규비목 단가의 낙찰률 적용 오류 등으로 제경비 포함 13,950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과다 계상된 금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설계변경 감액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감액 1건 / 13,950천원

❖ 영동군 조치계획		
조 치 계 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설계 변경하여 과다 계상된 13,950천원에 대하여 감액토록 함.(2019.07.24.)	산림과	행정8급, 남기대 (740-3334)

처분요구서(42)

【제 목】 ○○ ○○○ 자연휴양림 조성 건축사업 설계 검토 소홀

【현 황】

- 위 치 : 영동군 ○○면 ○○리 산○-○○번지
- 대지면적 : 600㎡
- 공사규모 : ○○1동 신축(지상 2층 / 연면적 136㎡)
- 공 사 비 : 324,776천원(도금액 286,090 / 관금액 38,686)
- 계 약 일 : 2018. 9. 14.
- 공사기간 : 2018. 9. 19. ~ 2019. 8. 2. ※ 현공정 80%(내부마감 공사중)
- 도 급 자 : (주)○○건설 대표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 자연휴양림 조성’ 건축공사를 (주)○○건설과 2018. 9. 14.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8. 9. 19. 착공하여 2019. 8. 2.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동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1개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이 현장여건 상 10회이나 설계내역에는 14회로 산출하는 등 제경비 포함 6,553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과다 계상된 금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설계변경 감액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감액 1건 / 6,553천원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설계 변경하여 과다 계상된 6,553천원에 대하여 감액토록 함.(2019.10.04)	산림과	행정6급, 김호욱 (740-3342)

처분요구서(43)

【제 목】○○○ ○○○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추진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영동군 ○○○○ ○○리 ○○○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사규모
 - 증축 : 노유자시설 151.68㎡(지상2층 / 철골조)
 - 기존 보수 : 노유자시설 1,299.38㎡(지하1층,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조)
- 공 사 비 : 264,899천원(건축 231,456 / 전기 22,423 / 통신 11,020)
- 계 약 일 : 2019. 3. 22.
- 공사기간 : 2019. 3. 28. ~ 2019. 7. 25. ※ 현공정 30%(1층 골조공사중)
- 도 급 자 : (주)○○종합건설 대표 ○○○
- 추진경과
 - 2019.03.22. 공사계약(건축, 전기, 통신)
 - 2019.03.28. 시공업체 착공계 제출
 - 2019.04.10. 증축공사분 터파기
 - 2019.04.11. 버림콘크리트 타설
 - 2019.04.20. 기초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 2019.05.29. 건축감리용역 집행 의뢰(영동군 ○○○○과→○○과)
 - 2019.06.11. 건축감리용역 계약(○○건축사사무소)
 - 2019.06.13. 건축감리용역 착수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건축공사를 (주)○○종합건설과 2019. 3. 22.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9. 3. 28. 착공하여 2019. 7. 25.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과정에서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공사감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시공자가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이 기초공사의 철근배치 완료, 지붕철골의 조립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 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 영동군 ○○○○과에서는 ○○○복지관 증축공사(지상 2층, 연면적 151.68㎡, 건축허가 대상)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후 공사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현재 공정에 있어서 기초공사의 철근 배치를 검사한 후 공사감리 중간보고 등을 했어야 함에도 공사감리자 지정 없이 2019. 4. 10.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였고, 2019. 4. 20. 기초 및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였다.
- 이에 대하여 영동군 ○○○○과에서는 건축인허가 신청 등 관련법령 연찬이 미흡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며 공사감리자 검사·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사기간 중 감리업체와 계약하여 2019. 6. 13. 감리용역을 착수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공용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감리자 지정 등을 적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상 처분 : 훈계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건축법등 건축인허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6급, 배두식 (740-3571)

처분요구서(44)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변경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영동군 ○○○면 ○○리 일원
- 공 사 비 : 2,569백만원 (도금액 1,150 관금액 1,418)
- 사 업 량 : 호안정비 L=0.7km, 압거 2개소, 소교량 1개소 등
- 계약일자 : 2017. 4. 25.
- 사업기간 : 2017. 4. 27. ~ 2020. 1. 4.(26개월) / 현공정 70%
 - 1차분 : 2017. 4. 27. ~ 2017. 10. 23. / 2017. 10. 23. 준공
 - 2차분 : 2018. 2. 26. ~ 2018. 12. 23. / 2018. 12. 17. 준공
 - 3차분 : 2019. 4. 27. ~ 2020. 1. 4. / 2020. 1. 4. 준공예정
- 도 급 자 : (주)○○건설 대표이사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소하천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상습적인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소하천 정비사업’을 (주)○○건설 대표이사 ○○○와 2017. 4. 25. 도금액약 체결하고 2017. 4. 27. 착공하여 2020. 1. 4.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영동군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1차분)을 추진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설계 내역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철거비용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법」 제77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함에 이의 설치·철거 비용을 설계 내역서에 계상하였다.

○ 그러나 영동군 ○○○○과에서는 추진 중인 ○○ 소하천 정비사업(1차분)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반영된 세륜세차시설 및 축중기 설치·철거 비용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 과다 지급하였으며, 또한 ○○ 소하천 정비사업(1차분)에 따른 환경보전비 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환경관련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영동군에서 직접 지급한 노무비와 중복되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환경보전비와 노무비를 중복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결과적으로 영동군 ○○○○과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와 같이 설계내역을 과다 계상하여 21,874천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 설계 과다계상 내역

구 분	규격	설 계	시 공	증·감(△) (단위:천원)
계				△ 21,874
세륜세차시설	자동세륜기, 24개월	1개소	미설치	△ 18,578
축중기설치 및 철거	이동식(24개월)	1회	미설치	△ 2,497
환경관리비	환경관련 인건비 정산 : 노무비 중복지급			△ 799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실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조속히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감액 1건 / 21,874천원

❖ 영동군 조치계획		
조 치 계 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설계 변경하여 관리소하천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사업비 및 노무비 중복지급 내역(21,874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19.10.15.)	안전관리과	시설7급, 양성필 (740-3922)

처분요구서(45)

【제 목】 ○○ ○○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위 치 : 영동군 ○○면 ○○리 일원
- 공 사 비 : 1,390백만원 (도금액 986 관급액 404)
- 사 업 량 : ○○○테마길, ○○ 수변공원 조성 및 ○○의 거리특화
- 계약일자 : 2018. 12. 17.
- 사업기간 : 2018. 12. 19. ~ 2019. 6. 19.(6개월) / 현공정 90%
- 도 급 자 : (주)○○조경건설 대표이사 ○○○

❖ 추진경위

- 2016. 7. 26.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17. 4. 19.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17. 5. 30.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7. 26.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착수
- 2017. 8. 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 3. 23.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고시
- 2018. 8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18. 8. 20. : 토질조사 용역 착수
- 2018. 9. 6. : 토질조사 용역 완료
- 2018. 12. 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12. 7. :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 2018. 12. 19. : 공사 착공
- 2019. 4. 13. : 설계변경(1차)
- 2019. 6. 4. : 설계변경(2차)
- 2019. 6. 19. : 준공예정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특색있는 국악 마을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주)○○조경건설 대표이사 ○○○용과 2018. 12. 17.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8. 12. 19. 착공하여 2019. 6. 19.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장여건의 변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 추진하였다.

〔표〕 설계변경 현황

구 분	사업비(천원)			비고
	당초	변경(1차, '19.4.13.) (증·△감)	변경(2차, '19.6.4.) (증·△감)	
합 계	912,000	1,241,692 (증 329,692)	1,389,317 (증 147,625)	
도금액	576,500	880,935 (증 304,435)	985,776 (증 104,841)	70.9% 증
관급자재대	335,500	360,757 (증 25,257)	403,541 (증 42,784)	

1.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 대상사업이며,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해당 설계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도금액이 7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2.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미이행

- 또한 ○○ ○○마을 체험관광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으로 2018. 1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하였으며 2018. 12월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였다.

- 그러나 2019. 4. 13. 시행한 설계변경 사항중 주차장부지의 잔디블럭포장은 당초 사전재해영향성 협의시 “주차장 계획시 투수성포장 계획 요망”이라는

검토의견 조치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잔디블럭포장에서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5호(개정시행 2018.12.31.)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이나, 공사감독자는 주차장부지의 잔디블록 A=549㎡를 A=285㎡로 48% 감하고 아스콘덧씌우기 A=1,285㎡를 A=1,661㎡로 29% 증하는 등 불투수층 면적이 10%이상 증가함에도 재해영향성평가등의 재협의 검토없이 설계 변경 시행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 ○○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업무추진 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과 법률 등을 숙지하여 업무추진 시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국악문화체육과	시설7급, 조성민 (740-3215)

처분요구서(46)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영동군 ○○면 ○○리 ○○○-○○번지 일원
- 공사비 : 27,184백만원 (도금액 15,828 관금액 11,356)
- 사업량 : 호안정비 3.78km, 교량제가설 3개소, 우수관거정비 1.07km
- 계약일자 : 2017. 11. 29.
- 사업기간 : 2017. 12. 4. ~ 2022. 1. 11.(1,500일) / 현공정 30%
 - 1차분 : 2017. 12. 4. ~ 2018. 7. 30. / 2018. 7. 30. 준공
 - 2차분 : 2018. 3. 5. ~ 2019. 6. 17.
 - 3차분 : 2019. 3. 26. ~ 2020. 3. 19.
- 도 급 자 : ○○○건설(주) 대표이사 ○○○, ○○토건(주) 대표이사 ○○○
- 감 리 자 :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주)○○기술단 대표이사 ○○○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건설(주) 대표이사 ○○○ 외 1인과 2017. 11. 29.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7. 12. 4. 착공하여 2022. 1. 1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영동군 ○○○○과에서 추진중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1식)의 당초 단가산출서를 살펴보면 현장인근의 공시지가 및 부지임대면적을 추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 사항으로, 공사착공 후 현장사무실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하지 않음으로 94,038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 I] 현장사무실 토지이용현황

주소	지번	지목	이용면적(㎡)	공종	점용 및 임대료	비고
○○면 ○○리	○○○-○	도	200	도로점용	2,140,200원	
	○○○-○	도	286			
	○○○-○	답	6	사유지	임대료 16,000,000원 개발행위(형질변경) 405,299	
	○○○-○	답	1,086			
	○○○-○	답	132			
	○○○-○	전	502	하천점용	1,754,000원	
	○○○-○	전	330			
	계		2,542		20,299,499원	

[표 II] 설계 과다계상 내역

구 분	규 격	당 초 (천원)	변 경 (천원)	증·△감 (천원)
부지임대료	1식 (1,984㎡, 50개월)	114,337	20,299	△94,038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조속히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감액 1건 / 94,038천원

❖ 영동군 조치계획		
조 치 계 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부지임대료 정산에 따른 실정보고(2019.10.16.) • 향후 설계 변경하여 과다 계상된 128,000천원 (제경비포함)에 대하여 감액 조치 예정(2019.11.30.)	안전관리과	시설7급, 박범천 (740-3932)

처분요구서(47)

【제 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영동군 1·2·3종 시설물 관리 현황

구 분	등 급						비 고
	계	A	B	C	D,E	미확인	
1·2·3종 시설물	91	1	69	13	-	8	1종 2건 2종 27건 3종 62건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민간시설물 42개소, 3종 시설물 미등재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교량,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 3종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소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의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8. 1. 18. 시설물안전법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및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교통부 2018.3.13 통보)’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모든 공공시설물은 2018. 6. 30.까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8. 9. 30.까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완료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민간시설물의 소관부서인 영동군 ○○○○과 등 7개 부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는 종전의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에 따라 2018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조차 실시하지 않음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2. 3종시설물(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대상 관리 누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따르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상기 법 시행 이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대상 시설물을 선별하여야 한다.
- 이에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영동군 교량현황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미관리 교량(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제3종시설물 미지정)이 확인되었다.

[표 I]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 상 미관리 교량현황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m)	준공연도	관리주체	비고
1	○○교	○○면 ○○리	20	1977	○○○○과	연장 20m 이상, 경과년수 10년 이상
2	○○교	○○면 ○○리	32	2006	○○○○과	
3	○○교	○○면 ○○리	43.5	2004	○○○○과	

- 또한 영동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미관리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제3종시설물 미지정)이 확인되었다.

[표 II]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 미관리 건축물현황

연번	위치	지번	연면적(㎡)	주용도	사용승인	비고
1	○○면 ○○리	○○-○	1,366.37	숙박시설	1994	경과년수 15년 연면적(㎡) 1,000~5,000
2	○○면 ○○리	○○-○	1,433.02	숙박시설	1987	
3	○○면 ○○리	○○○-○	1,499.31	문화및집회시설	2000	
4	○○면 ○○리	○○○	2,779.75	문화및집회시설	1999	
5	○○면 ○○리	○○○-○	709.31	종교시설	2001	경과년수 15년 연면적(㎡)

처분요구서(48)

6	○○면 ○○리	○○○-○	808.92	운동시설	1992	500~1,000
7	○○면 ○○리	○○○-○	5,576.25	공장	1988	경과년수 15년 연면적(㎡) 5,000~30,000
8	○○면 ○○리	○○○-○	6,035.35 7,318.97	공장	1991	
9	○○면 ○○리	○○○	6,552	공장	1986	
10	○○면 ○○리	○○	8,287.3	공장	1999	
11	○○면 ○○리	○○○-○	9,008.19	공장	2001	
12	○○면 ○○리	○○-○	9,036	공장	1997	
13	○○면 ○○리	○○○-○	10,376.23	공장	1987	
14	○○면 ○○리	○○○	16,582.38	공장	1988	
15	○○면 ○○리	○○○	18,124.93	공장	1978	

- 위의 자료는 매년 실시하는 일제조사 및 실태조사 시 관련 시스템에서 교량 재원 및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만 하여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과거 일제조사 시 불성실한 자료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여야 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누락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 및 등재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3종 시설물 등재조치 하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19. 9.26. • 소관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완료 : '19.10.16. • 소관 부서별 실태조사 실시 : '19.11. 5.까지 • 3종시설물 지정·고시 : '19.11.29.까지	안전관리과	행정7급, 성기창 (740-3903)

【제 목】 암환자의료비 지원 시 긴급의료 중복지원 확인 소홀 등

【현 황】

<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 16. 2. 23. : ○○○ 긴급의료비 지원 청구(○○○○병원)
- 16. 2. 26. : ○○○ 긴급의료비 지급(1,409,390원)
- 16. 4. 7. :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긴급의료지원 중복 확인 협조
- 중복여부 미확인으로 암환자 의료비 중복 지원

< 암환자의료비 관련 중복(한도초과) 지원현황 >

(단위 : 원)

사업명	성명	지원일	급여	비급여	비고
긴급의료지원사업	○○○	2016.02.26.	13,600	1,409,390	한도초과액 1,000,00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016.04.12	13,600	1,000,000	중복지급 13,600

【지적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료지원)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제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대상지원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긴급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2016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암환자는 우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해 ○○○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타법률 제도에 의한 국가지원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 지원받은 경우 암환자의료비 최대 상한 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하도록 하는 등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타 국가지원금(긴급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이에 영동군 0000과는 긴급지원 안내 지침에 따라 2. 23일 000 치료병원인 0000병원으로부터 긴급지원 선 청구가 있자 관련지침에 따라 암환자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000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여야 함에도 청구한 금액대로 2. 26일 지급하였다.
- 또한 000이 약 40일 뒤 영동군 000로 신청한 암환자의료비 지급을 위해 0000과로 16. 4. 7. 긴급의료비 지원 중복여부 협조요청에 대하여도 지침을 잘못 판단하여 중복 지급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000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한금액을 초과 지원(1,013천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영동군 000 및 0000과 의견 검토결과 의료비 지원의 선후 관계없이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나 긴급의료 담당자가 잘못 판단하여 암환자의료비 긴급의료 청구가 있자 선 지원하고, 000에서 긴급의료 지원 중복여부 조회 시에도 중복지원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0과, 000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0000과), 주의(0000과)
 - 0000과에서는 000에게 암환자 의료비로 과다지급된 1,000,000원과 중복 지급된 급여비용 13,600원 회수하시고,
 - 0000과에서는 암환자의료비 관련 긴급의료 지원 청구 시 보건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1건 / 1,013,600원(회수)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긴급의료비 중복지원금에 대하여 환수 통보('19.10.08.) • 중복지원금 환수 조치('19.10.18.)	보건소	보건6급, 이명희 (740-5592)
• 향후 암환자 관련 긴급의료비 지원 청구 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행정8급, 박미나 (740-3584)

처분요구서(49)

【제 목】 감염병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소홀 등

【현 황】

○ 소독의무대상시설 지정 현황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업체수	98개소	101개소	107개소	109개소	112개소	

○ 소독업체 현황

(기준 : '18. 12월말)

연번	업소명	대표자	종사자수	신고일자	비고
1	0000공사	000	3	99.03.17	
2	00세상	000	-	08.01.15.	
3	(주)0000	000	1	11.08.26.	
4	00멤버스	000	-	14.01.16.	
5	00엔지니어링(주)	000	-	15.04.15.	
6	0000크린	000	1	16.06.30.	

○ 소독업체 법정교육 미이수 현황

업체명	성명	교육명 (소독업자/종사자)	처분현황	비고
0000크린	000	대표자 신규반	없음	3년 4개월 경과 후 교육이수
(주)0000	000	종사자 신규반	없음	4년 6개월 경과 교육 미이수
00케어	000	대표자 신규반	없음	15. 5월 교육 미이수 ('16.4.4.폐업)

【지적내용】

- 영동군 000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용이하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자 소독의무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하고, 이에 따른 소독업체 신고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이행여부 점검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 종류 및 계절에 따라 매 1개월에서 6개월 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 7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른 소독횟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및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관할지역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자로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마다 소독실시에 관한 관계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소독실시 현황을 파악한 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소독이행 독촉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법정 소독 실시 횟수를 준수하도록 관리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영동군000에서는 매년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연 3회 ~ 9회까지 업소별 다양한 횟수로 분기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소독 현황을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소독의무 미 이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소독업 영업자 지도점검 소홀

- 영동군 000에서는 관내 소재한 소독업체 6개소에 대하여(2018. 12월말 기준)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하였을 때에는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1항에는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영업정지 등) 제1항에는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영동군000에서는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사항 기록·보존 여부 확인(2년) 및 휴폐업 여부, 소독업 신고사항 준수여부,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여부, 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감사대상 기간 중 단 1회(2018년)에 그쳐 소독업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소독업체 법정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자는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8조 제2호에 따르면 군수가 소독업자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소독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의 폐쇄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음.
- 감사대상 기간 내 소독업 6개 업체에 대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 ‘0000크린’은 2016. 6. 30. 소독업 신고 이후 3년 4개월 경과 후에 소독업 신규 대표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 ㈜0000은 2014년 하반기 교육대상임에도 4년 6개월 경과된 현재까지 종사자 교육을 미 이수 하였고
 - ‘00케어’ 는 2015. 5. 12. 교육을 미 이수하고 11개월 후 폐업 하는 등 영동군000에서는 교육 미 이수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독업체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 이행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소독업체 법정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관리를 위하여 시설로부터 매분기 마다 소독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소독 미 이행 업소 3개소에 과태료 부과하였음. •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중이며, 법정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시달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보건소	의기6급, 장준미 (740-5611)

처분요구서(50)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현 황】

○ 위반업소 현황

업소명	위반내용	위반 통보일	처분사전 통지일	처분 현황	비고
00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제2호 위반 성매매알선행위	18.1.22.	18.12.20	없음	법원에서 판결(항소)진행 중인 사항으로 선고까지 행정처분 보류

【지적내용】

○ 영동군 0000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군수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소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영동군 0000과에서는 2018.1.22. 영동경찰서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한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내부검토 과정 없이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개월이 지난 2018.12.18.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를 징구하였으며,

- 또한 행정처분 이전 의견수렴 결과 영업주로부터 법원에 항소중이니 판결 시 까지 기다려 달라는 영업주의 의견만 수렴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미 실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0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성매매알선행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속히 행정처분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2019. 7. 02.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영업정지 3개월 2019.9.01.~ 2019.11.29.)	가족행복과	보건9급, 황진하 (740-3794)

처분요구서(51)

【제 목】유통식품 수거검사 소홀

【현 황】

○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수거 검사	부적합	수거 검사	부적합	수거 검사	부적합	수거 검사	부적합	
계	131	0	161	2	174	0	152	0	
재래시장									
대형마트	130	0	156	2	164	0	147	0	
식품제조업소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기타	1	0	5	0	10	0	8	0	

【지적내용】

- 영동군 0000과에서는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지침」 VIII. 농수산물식품안전관리 【농산물 안전관리】 3.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에 따르면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반복적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도매시장, 국도변 농산물 직거래장 등 위생 취약지역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거검사(자체계획의 30% 이상)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영동군 0000과에서는 재래시장, 학교주변 취약지역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하여 의뢰한 실적은 전무하고, 대형마트에서 대부분의 식품을 수거하는 등 매년 반복적이고 편중된 수거검사를 추진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0000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유통농산물에 대한 대형마트 외 재래시장, 취약지역 등에서 30%이상 수거 검사 의뢰 진행 중 (유통농산물 의뢰 15건 중 전통시장 5건 수거 검사) • 향후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가족행복과	보건7급, 권명환 (740-3793)

처분요구서(52)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현 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건축연면적 및 용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적정 부과	하수예정량
(주)○○○ (○○○)	○○면 ○○○○로 1○○-○○	2,861.4㎡ 공장, 사무실	39,972,470원	18.970015㎥/일

※ 원인자부담금 = 하수처리량 × 단위단가¹³⁾(2,107,140원/㎥·일)
 = 18.970015㎥/일 × 2,107,140원/㎥·일 = 39,972,470원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제2항 및 시행령 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영동군 하수도 조례」 제18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다른 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승인 시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개발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항에는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3) 영동군 공고 제2011-735호(2011.12.22.)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2,107,140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한편, 영동군 ○○○○과에서는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3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영동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1,30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따라서 영동군 ○○면 ○○○○○로 ○○-○[(주)○○○] 지역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관련 ○○○○○○조성사업 승인 시 이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16. 5. 2. ○○면 ○○○○○로 ○○-○(○○면 ○○리 ○○외 2필지) 공장 건축허가(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9,972,470원을 착오부과 후 징수하였다.
- 영동군 ○○과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적정하게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급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착오부과로 납부된 (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자에게 공문으로 사전통보한 후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착오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환급 1건 / 39,972,470원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조치 예정(19. 11월중)	환경과	환경8급, 이지우 (740-3435)

처분요구서(53)

【제 목】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현 황】

○ 정기검사 안내·독촉 미이행 및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유자	생년 월일	등록 번호	유효 기간	검사 기간	검사 종료일	경과일 (일)	과태료 금액
계	9명						19.6.3 기준	1,560
1	백○○	00.00.00	충북영동 다○○○○	2016.04.15	2016.03.16	2016.05.16	1,175	200
2	최○○	00.00.00	충북영동 차○○○○	2016.07.30	2016.06.30	2016.08.30	1,069	200
3	정○○	00.00.00	충북영동 나○○○○	2017.01.23	2016.12.24	2017.02.23	892	200
4	이○○	00.00.00	충북영동 가○○○○	2017.09.24	2017.08.25	2017.10.25	587	200
5	김○○	00.00.00	충북영동 가○○○○	2018.04.16	2018.03.17	2018.05.17	383	200
6	영동 ○○○	00.00.00	충북영동 가○○○○	2018.12.20	2018.11.20	2019.01.20	135	200
7	임○○	00.00.00	충북영동 가○○○○	2019.01.01	2018.12.02	2019.02.01	123	200
8	성○○	00.00.00	충북영동 가○○○○	2019.02.25	2019.01.26	2019.03.28	68	140
9	박○○	00.00.00	충북영동 자○○○○	2019.04.20	2019.03.21	2019.05.21	14	20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를 제도화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¹⁴마다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3년부터 매년 자치단체 통보)」에 따르면
 - 자치단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을 활용하여 정기검사 대상목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대상임을 안내¹⁵하고,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정기검사 유예 가능한 사항 및 신청방법,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고,
 -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면서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제11호에는 제62조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4조(과태료) 제5항에는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별표 15호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부과하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사용권한을 신청하여 부여받고,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검

14)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87조제4항 관련, 별표 23의 2)

15) 주소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등기를 이용하여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

○ 제원 오류로 수검자가 불명확한 경우

- 불명 시 검사기간 도래 전까지 차대번호 수정 등 오류 제원 정정이 불가한 경우는 오류정정 완료시점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유예처리
- 정기검사 신청기간 중이나 경과 후에 오류 정정을 완료하고 지자체에서 안내장을 발송하는 경우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62일 또는 오류정정 완료일로부터 62일 중 더 이후 날짜로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안내

사 대상자에게 검사 일정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및 검사 명령을 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검사명령 불응자는 고발 조치하는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 2015.부터 2019. 6.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현황과 같이 ○○○ 등 9명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정기검사 안내 및 독촉장 발송,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단계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기검사 미이행자(9건)에게 과태료 1,560,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 영동군 ○○과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담당자 간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및 상호 업무 연찬을 통하여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 등 9명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시고,
- 앞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검사일정 안내 등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부과 9건 / 1,560천원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2019. 10. 21.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 2019. 10. 31.까지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명령 : 2019. 10. 22.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명령 이행 기간 : 2019. 11. 22.까지	환경과	환경9급, 황득열 (740-3407)

처분요구서(54)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시설 관리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 소홀

【현 황】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2019. 5월 현재)

(단위 : 개소)

5년 경과시설 (허가시설)	연장허가 여부		비고
	연장	미연장	
88	66	22	

※ 미연장 시설: 22개소(공공용 14, 민간용 8개소)

○ 미연장 공공용 시설 현황 : 붙임 1

○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이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2015.5~ 2015.12.	2016	2017	2018	비고
종료신고 미이행	12	2	3	4	3	

※ 작성 기준 : 원상복구에정일

○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이행 시설 내역(과태료 부과대상) : 붙임 2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준공, 점검 및 이용실태조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굴착행위신고 등의 지하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시설 관리 소홀 및 연장허가 미이행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¹⁶⁾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을 받도록 통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영동군 ○○○○○과, ○○○○○소, ○○○○○과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했다.

¹⁶⁾ 지하수 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함(지하수법 제2조제2호)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기간(5년)을 경과한 88 개소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2016년 1회만 안내하였을 뿐 현장 확인, 원상복구 명령, 유효기간 연장 신고 수리, 허가취소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2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장신고 없이 방치되고 있다.

- 그리고 붙임 1의 표와 같이 영동군 ○○○○과에서는 ○○읍 ○○리 ○○번지 1호 등 농업용 5개소, ○○○에서는 영동군 ○○면 ○○리 ○○번지 등 음용수(생활용수)용 8개소, ○○○과에서는 ○○에 생활용수 1개소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고서 유효기간이 짧게는 1년 8개월, 길게는 8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하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장허가 없는 14개소 시설이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업무처리 소홀

○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뿜아 쓰지 않는 공사를 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따르면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2호 아목에 따르면 굴착행위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후 원상복구예정일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지하수의 영향이 미치는 굴착행위신고에 따른 원상복구예정일을 경과하고도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12건(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에 대하여 과태료 6,000,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 영동군 ○○과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효기간 연장굴착행위 종료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찬하고 점검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시정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영동군 ○○○○과 등 2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즉시 안내하고,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 미신고 예방을 위하여 종료신고 예정일 1개월 전에 종료신고를 안내하여 주시고,

- 아울러 「지하수법」 제39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주)○○○○○ 등 12개소(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고, 앞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 등 지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부과 15건 / 6,000천원

○ 신분상 처분 : 없음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향후 지하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찬하고 점검하여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 2019. 10. 25.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시설 연장허가 안내 : 2019. 10. 25.	환경과	환경7급, 서승덕 (740-3423)

[붙임 1 : 연장허가 미이행 시설]

연번	신고인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준공일	유효 시작일	유효 종료일	비고
합계	22 개소						
1	영동군청 (○○○○과)	영동군 ○○읍 ○○리 ○0번지 1호	농업용	1999.12.30	2011.11.17	2016.11.16	
2	영동군청 (○○○○과)	영동군 ○○○면 ○○리 ○○번지 0호	농업용	1999.12.30	2006.11.17	2011.11.16	
3	영동군청 (○○○○과)	영동군 ○○○면 ○○리 ○2번지	농업용	1999.12.30	2006.11.17	2011.11.16	
4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번지	음용수	1999.06.28	2011.11.17	2016.11.16	
5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번지	음용수	1999.06.28	2011.11.17	2016.11.16	
6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6번지 1호	음용수	1999.06.28	2011.11.17	2016.11.16	
7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973번지	음용수	1999.06.28	2011.11.17	2016.11.16	
8	영동군청 (○○○○과)	영동군 ○○면 ○○리 ○0번지 1호	농업용	2005.11.01	2010.06.23	2015.06.22	
9	영동군청 (○○○○과)	영동군 ○○면 ○○리 ○5번지	생활용수	2006.08.04	2012.09.04	2017.09.04	
10	영동군청 (○○○○과)	영동군 ○○면 ○○리 ○9번지 1호	농업용수	2010.12.01	2012.01.24	2017.01.23	
11	영동군수 (○○○○소)	영동 ○○면 ○○리 ○9번지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2010.12.09	2012.08.30	2017.07.29	
12	영동군수 (○○○○소)	영동 ○○면 ○○리 ○2번지	농업용	2008.12.15	2008.07.07	2013.07.06	
13	(주)○○○○	영동 ○○면 ○○○리 ○5번지	공업용수	2009.03.16	2014.02.16	2019.02.15	
14	(주)○○○○	영동 ○○면 ○○○리 ○5번지	공업용수	2009.03.16	2014.02.16	2019.02.15	
15	(주)○○○○	영동 ○○면 ○○○리 ○4번지 3호	공업용수	2009.03.16	2014.02.16	2019.02.15	
16	학교법인 ○○○○	영동군 ○○읍 ○○리 산 ○번지 1호	생활용수 (일반용)	2009.03.25	2014.03.18	2019.03.17	
17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번지 3호	생활용수	2009.10.20	2009.07.10	2014.07.09	
18	영동군수 (○○○○소)	영동군 ○○○면 ○○리 ○5번지 1호	생활용수	2011.05.04	2010.12.20	2015.12.19	
19	(주)○○○	영동군 ○○면 ○○리 산 ○번지	생활용수(음용)	2012.09.03	2012.07.17	2017.07.16	
20	(주)○○	영동 ○○○면 ○○리 산 27번지 8호	생활용수	2014.05.08	2014.02.06	2019.02.05	
21	(주)○○	영동 ○○면 ○○리 7번지3호	생활용수	2014.05.08	2014.02.06	2019.02.05	
22	(주)○○	영동 ○○면 ○○리 산 ○번지 8호	생활용수	2014.05.08	2014.02.06	2019.02.05	

[붙임 2 :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이행 시설 내역]

단위(천원)

연번	신고인	굴착행위 위치	굴착목적	허 신 고 일	착 일	공사 자	원상복 구 예정일	미부 과 금 액
합계	12개소							6,000
1	(주)○○○○○	영동읍 ○○리 ○○	지반조사	2015.4.9	2015.4.9		2015.6.30	500
2	○○○○○○○ ○○○	○○면 ○○리	지하수영향조사	2015.6.5	2015.6.5		2015.7.31	500
3	○○○○○	○○면 ○○리 ○○	금은광산탐사	2015.11.2	2015.11.2		2016.1.31	500
4	○○○	○○읍 ○○리 ○○	웰리스 단지조성 지질조사	2016.3.15	2016.3.10		2016.5.31	500
5	○○○○○○○	○○군 ○○리	지반조사	2016.7.29	2016.7.28		2016.9.30	500
6	○○○○○○	○○읍 ○○리	지반조사	2017.5.18	2017.5.18		2017.6.9	500
7	(주)○○○○○○○ ○○○	○○면 ○○리 ○○	생활용수개발	2017.9.15	2017.9.15		2017.9.30	500
8	(주)○○○○○	○○면 ○○리 ○○	지반조사	2017.11.15	2017.11.15		2017.12.28	500
9	○○○○○○○ ○○○○○	○○읍 ○○리 산○번지	암반대수층 특정파악	2016.7.15	2016.7.4		2017.12.31	500
10	(주)○○○○○○○ ○○○	○○읍 ○○리 197	지반조사	2018.3.6	2018.3.8		2018.3.9	500
11	(주) ○○○○○	○○읍 ○○리	지질조사	2018.5.8	2018.5.10		2018.5.30	500
12	(주) ○○○○○	○○면 ○○리 산40	지질조사	2018.6.14	2018.6.15		2018.10.5	500

처분요구서(55)

【제 목】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소홀

【현 황】

○ 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현황

업소명	위반 확인일 (처분일)	위반내용 및 확인일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사항	위반 차수	이행 확인	비고
○○○○ 법인 (○○○)	2017. 4.6. (6.9.)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6천만원)	1차	-	충청북도 ○○○○○○○○ 적발
	2019. 1.14. (5.27.)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영업정지 6개월	1차	6.18.	2017.4.6. 처분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지적내용】

- 영동군 ○○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1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행정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별표 21〕 행정처분기준 2호 개별기준 다목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5), 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허가 취소)을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회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처분을 한 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85호, ‘15.6.1.)」(이하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 한다)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2017. 4. 6. ○○○○○○○○법인의 변경허가 미이행¹⁷⁾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대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2017. 6. 9.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변경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 받지 않고 계속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사항(변경허가 미이행 2차 처분)을 검토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2017. 4. 6.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법인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2019. 1. 4. 악취 민원신고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인에서 2017. 4. 6.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2019. 1. 4. 악취민원이 발생하였고,
 - 영동군 ○○과에서는 2019. 5. 27.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을 재실시 하기에 이르렀다.
- 결국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과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1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허가 취소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1년이 지나 적발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이에 영동군 ○○과에서는 변경허가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시켜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면서 현지 점검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기에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행정처분 사업장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영동군 ○○과의 의견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사용중지 및 폐쇄 규정이 없어 즉시 사용중지 등을 하지 못한 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 사유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면서 인허가 부서는 현재의 무허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음을 진술하였으며, 행정처분 담당자 또한 변경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

17) 충청북도 민생사업특별경찰팀 적발(변경허가 받지 않고 재활용<퇴비화>시설 설치 사용)

로 변경허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무허가 시설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영동군의 의견처럼 관련법에 사용중지 규정이 없는 것이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지 확인과 지도점검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관련공무원조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문책양정	현근무처
〃	담당자	○○6급	○○○	2016.07.06.~2017.12.31.	훈계	○○과 (현,○○○○담당)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영동군 ○○과

○ 행정상 처분 : 주의

-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동 시설이 무허가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 영동군 조치계획		
조치계획	관 련 부 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 향후 행정처분 이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환경과	환경6급, 정성현 (740-3412)